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 회 의 명 : 제30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 회의일시 : 2017. 9. 8.(금) 09:32

□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 참석위원 : 이효성 위 원 장
허 욱 부위원장
김석진 상임위원
표철수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5인)

□ 불참위원 : 없 음

제30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09시 32분 개회 】

1. 성원보고

○ 이효성 위원장
- 차중호 의안·정책관리팀장 성원 보고해 주십시오.

○ 차중호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기에 대한 경례

○ 차중호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이효성 위원장
- 2017년 제30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지난 회의록 확인

○ 이효성 위원장
- 제27차 및 제28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이효성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3건,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중 <의결안건 가>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임명 동의에 관한 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에 의거 비공개로 진행하고, 나머지 안건은 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에서 <의결안건 가>는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고, <의결안건 나>, <의결안건 다> 및 <보고안건 가>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안건 심의를 위해 <의결안건 가> '2017년도 1분기 재난방송 미실시 방송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건'은 관련 사업자가 많은 관계로 오전 회의가 끝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의를 들어가기 전에 장내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메라 기자들에게 조금 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의 효율성을 위해 <의결안건 나>와 <보고안건 가>를 먼저 논의하고, 비공개 안건인 <의결안건 가> 순으로 심의하겠습니다.

6. 의결사항

나. ㈜위드이노베이션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2017-30-162)

○ 이효성 위원장

- 먼저 <의결사항 나> '㈜위드이노베이션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안건은 피심인 측의 의견진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님은 안건 내용 중 조사결과와 법 위반사항을 먼저 보고해 주십시오.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입니다. ㈜위드이노베이션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안)를 아래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면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 및 제29조제2항을 위반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4조제4항, 제64조의3제1항, 제69조의2 제2항 및 제76조제1항에 의한 시정조치(안)를 심의·의결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조사배경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3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신고와 관련된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위드이노베이션이 지난 3월 21일 해커의 협박메일 및 민원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인지하고, 3월 22일 유출사고를 신고하였습니다. 해커는 ㈜위드이노베이션이 운영하는 숙박앱 '여기어때'를 이용한 이용자 4,817명에게 음란 문자메시지를 3차례 발송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과기정통부와 민관합동조사단을 12명으로 구성하여 현장조사를 3월 23일부터 5월 11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결과는 4월 26일 발표하였으며, 조사결과 및 행정처분안 관련 법령 검토 그다음에 시정조치(안)에 대한 사업자 의견제출 통지 및 의견 접수를 8월 14일까지 하셨습

니다. 참고로 경찰은 6월 1일 해커 1명, 해커 알선책 2명 등 총 4명을 검거했다는 사실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조사결과입니다. 먼저 피심인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드이노베이션은 2015년 9월 21일 설립된 숙박O2O 사업자이며, 영리를 목적으로 '여기어때'와 '호텔타임'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입니다. '16년 말 기준으로 종업인은 193명이며, 매출액 246억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개인정보유출경로 조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해킹사고 관련 서버 총 16대, 웹서버 로그기록 1,560만건 등 접속기록 분석 등을 통해 확인 조사한 결과, 해커는 '17년 2월 27일부터 3월 5일까지 ㈜위드이노베이션 마케팅 센터의 SQL 인젝션 공격에 취약한 웹페이지를 공격하여 '여기어때' 서비스 DB정보를 수집하고 관리자 인증 세션 값을 788회 조회 및 탈취하고 '17년 금년 3월 6일 23시경 '여기어때' 서비스의 관리자 홈페이지에 최고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하여 제휴점 관리, 예약, 회원관리 메뉴에서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다운로드 및 자동화된 프로그램으로 반복 조회를 통해 자료를 탈취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해커는 문자발송업체인 ㈜이젠이 운영하는 '충전요'서비스 서버의 취약점을 이용하여 원격에서 DB에 접속하여 SMS 문자발송을 위한 DB 테이블에 숙박 이용 내역 문자를 입력하고 '여기어때' 웹이용자들에게 SMS 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드이노베이션이 '여기어때'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수집한 정보 중 숙박예약정보, 제휴점정보, 회원가입 정보는 총 3,418,998건이 외부로 유출되었으며, 이 중 서비스 이용자의 이름·연락처 등 식별가능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은 총 3,417,835건이 되겠습니다. 휴대전화 등을 기준으로 중복 제거 시 총 97만여명의 정보가 유출된 것이 파악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23만여건의 숙박예약 정보 중에서 4,817건에 대해 해커가 문자발송을 통해 예약자 휴대전화번호로 '예약자, 숙박업체명, 예약일'을 공개하고, 경찰청의 해커 검거 수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해커는 페이스북에 유출 개인정보 약 5,000여건을 게시하는 등 공중에게 공개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제2호와 관련된 6개 위반사항을 파악하였습니다. 먼저 고객센터 상담직원 35명에게 개인정보처리시스템 파일 다운로드 권한을 부여하는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최소 부여 원칙을 위반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취급자 인사이동 시 지체 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하여야 하나 유출사고 인지 시까지 변경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취급자가 외부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 시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침입차단 및 탐지시스템 설치·운영을 소홀히 하고 개인정보 다운로드·파기 가능한 취급자의 컴퓨터망을 분리하지 않았으며, 외부 웹페이지의 취약점 점검을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제28조제3호 개인정보 보호조치(접속기록) 위반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은 6개월을 보관하고 월 1회 이상 정기점검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개인정보 보호조치 암호화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1항제4호가 되겠습니다. 관리자 페이지 접근권한 변경이력의 관리자 비밀번호를 평문으로 저장하고 직원 개인용PC에 이용자개인정보 약 2만여건을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한 바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정보통신망법 제29조제2항 1년간 서비스를 미이용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약 110만여건을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정보와 분리하여 별도 저장하도록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망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였습니다. 사업자 의견 및 검토의견은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고,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피심인이 출석했기 때문에 의견진술 듣고 시정조치(안)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피심인 ㈜위드이노베이션 측 관계자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청취에 앞서 장내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위드이노베이션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전 당사자 의견청취 절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드이노베이션 관계자 입장하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진술인 입장)

바쁘신 일정 중에도 멀리 이곳까지 와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위드이노베이션사가 보관, 관리하는 개인정보가 2017년 3월 7일경부터 3월 17일경까지 해커에 의한 해킹으로 '여기어때' 서비스의 숙박예약정보 및 회원정보 등이 유출됨에 따라, 과학기술통신부와 합동으로 함께 민관합동조사단과 함께 사고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드이노베이션사의 정보통신망법 위반을 확인하였기에, 지난 6월 5일 ㈜위드이노베이션사에 관련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해당 행정처분의 실시에 앞서 행정처분 당사자인 ㈜위드이노베이션사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참석자를 확인하겠습니다. ㈜위드이노베이션사의 부대표이신 장영철 님 맞습니까?

○ **장영철 ㈜위드이노베이션 부대표**

- 예, 맞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법무팀장이신 손정수 님 맞습니까?

○ **손정수 ㈜위드이노베이션 리스크관리팀 과장**

- 예, 맞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의견진술에 앞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견진술은 상정된 안건의 해당 행정처분을 실시함에 앞서 행정처분 당사자인 ㈜위드이노베이션사 측의 법 위반사유 및 관련 소명을 듣고 향후 계획 등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의견진술 과정에서 성실하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부대표이신 장영철 부대표께서 이번 행정처분(안)과 관련된 5분 정도의 모두 발언을 하신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장영철 부대표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잠깐만요. 위원장님, 제가 확인을 하고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 **이효성 위원장**

- 예, 그러시지요.

○ **고삼석 상임위원**

- 이분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장영철 부대표님, 등기이사입니까?

○ **장영철 ㈜위드이노베이션 부대표**

- 예, 맞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혹시 회사에 지분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 **장영철 ㈜위드이노베이션 부대표**

- 지분은 없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스톡옵션입니까?

○ **장영철 ㈜위드이노베이션 부대표**

- 예,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얼마나 가지고 계시지요?

○ **장영철 ㈜위드이노베이션 부대표**

- 지금 5~6% 정도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주식으로 몇 주 정도 됩니까?

○ **장영철 ㈜위드이노베이션 부대표**

-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펀드라서 정확하게 몇 주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지금 맡고 있는 업무가 무엇입니까? 부대표는 어떤 일을 합니까?

○ **장영철 ㈜위드이노베이션 부대표**

- 서비스 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보안 쪽 관리책임자는 아니지요?

○ **장영철 ㈜위드이노베이션 부대표**
- 그 부분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자는 아닙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다음에 손정수 과장님 아까 법무팀장이라고 하셨는데….

○ **손정수 ㈜위드이노베이션 리스크관리팀 과장**
- 예, 맞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지금 보안 쪽도 책임을 지고 계십니까?

○ **손정수 ㈜위드이노베이션 리스크관리팀 과장**
- 현재 보안책임은 아닙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하시는 것입니까? 법무팀장으로 법적 대응만 하시는 것입니까?

○ **손정수 ㈜위드이노베이션 리스크관리팀 과장**
- 법정 대응을 비롯해서 개인정보사고가 났을 때 제가 방통위 조사에 참석해서 기술적·관리적 조치에 대한 내용을 혹시 필요하면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런데 보안책임자가 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쪽에서 수를 제한한 것은 아니지요?

○ **장영철 ㈜위드이노베이션 부대표**
-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면 제출할 내용들은 서면으로 다 드렸다고 생각하고, 또 기존에 요청하신 내용도 있어서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이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되어서, 오늘 들어온 목적은 여기에 대한 의견보다는 저희 회사에 대한 내용들이 기존의 조사과정에서 말씀드리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참작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찾아 뵌 것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장영철 부대표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철 ㈜위드이노베이션 부대표**
- 본 건 사안을 말씀드리기 위해 대표이사 불참에 대해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의 중

요성을 인지하여 대표이사가 기존 의결일인 목요일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공교롭게도 변경된 의결일이 저희 해킹사건의 재판이 오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증인으로 부득이하게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법원 확인 결과, 증인은 불참이나 대리출석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주셔서 부득이하게 제가 참석하게 됐습니다. 이 점 다시 한 번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것은 그동안 말씀드리지 못했던 저희 '여기어때' 서비스를 시작한 목적과 진행 과정과 그것을 통해 작게나마 저희가 기여하고자 했던 노력들, 현재 저희 회사의 상황을 말씀드림으로써 조금이나마 이번 사건 '여기어때'에 대한 이해를 돕고 최종 의결하시기 전에 이러한 배경을 헤아려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참석하게 됐습니다. 사업 초기 '여기어때'는 중소형 호텔 정보제공서비스로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어때'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소비자들은 객실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객실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고 손님이 많은 경우 숙박업소들은 2~3배 폭리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습니다. 저희는 중소형호텔 시장에서 당연하게 여겨졌던 정보의 비대칭, 불합리한 가격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소비자 권익을 향상시키고자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정확한 숙소정보 제공, 요금정찰제, 예약 문화 도입, 중소형호텔 인식 개선 등 많은 변화를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쉽지 않았지만 점차 기존 문제들이 조금씩 개선되고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변화된 모습에 보람을 느껴왔습니다. 저희 이런 노력들이 2016년 미래부장관상, '17년 포브스 아시아로부터 주목할 스타트업으로 선정되는 등 여러 가지 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이 과정에서 당장의 이익보다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더 나은 서비스를 만드는 것에 집중해 왔고 그로 인해 아직까지 상당한 규모의 누적적자 상태입니다. 그러나 '여기어때'를 통해 저희의 노력이 숙박시장의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되고 조금이나마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면 이러한 노력들이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여기어때'는 스타트업으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아직까지 조직 규모나 자금적인 부분들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자원을 사업과 인프라 전반에 고루 전반에 투입하고자 노력을 했지만 일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번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개인정보의 중요성과 저희가 더 잘해야 한다는 것을 더욱 깨닫게 됐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비단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와 유사한 규모의 스타트업들에게도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어떻게 대응하고 조치하는지가 선례로 남을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더욱 더 사후 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고 이후 저희는 계획되었던 모든 신규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가용 가능한 인력과 자원을 보안 강화, 개인정보보호 인프라 구축, 보안인력 영입 등에 투입하였고 그 결과, 상당한 진척이 있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제대로 된 후속조치로 업계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저희 스타트업 내 보안 개인정보 관리 및 사고예방을 위해 인식개선과 보안 문화 정착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아무쪼록 의결 시 이러한 점을 헤아려 최대한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저희 의견은 기존에 제출한 의견서와 제출자료를 참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과 말씀드립니다. 저희 ㈜위드이노베이션은 사후 조치와 재발방지를 위해 대표이사를 포함한 전 임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위원님들께서 ㈜위드이노베이션사의 정보통신망법 위반여부와 관련하여 확인하실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은 손을 들어 저에게 의사표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게 된 것이 사업자가 먼저 요청을 했습니까?

○ **장영철 ㈜위드이노베이션 부대표**

- 저희가 요청드렸습니다. 요청드린 이유는 저희가 저희 잘못으로 인해 처분을 받는데 저희가 불참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최소한 저희가 나와서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참석하게 됐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회사에 보안책임자가 따로 있습니까?

○ **장영철 ㈜위드이노베이션 부대표**

- 예, 회사에 따로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오늘 보안책임자가 나오는 것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회사가 언제 설립됐습니까?

○ **장영철 ㈜위드이노베이션 부대표**

- 2015년 9월에 설립됐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러면 2년 됐습니까?

○ **장영철 ㈜위드이노베이션 부대표**

- 예, 맞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작년 매출액이 약 246억원인데 들리는 바로는 올해 벌써 1,000억원을 돌파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올해 현재까지 얼마쯤 예상됩니까?

○ **장영철 ㈜위드이노베이션 부대표**

- 저희 올해 목표가 500억원 정도 되고 다른 자회사가 있는데 전체 포함해서 800억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억원이 넘었다는 것은 다른 내용인 것 같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어쨌든 800억원 정도 예상되는 아주 사세가 급신장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장영철 ㈜위드이노베이션 부대표**
- 저희가 지금까지 정확하지 않지만 260억원, 300억원 정도가 아직 안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올 연말까지 한다면 매출이 급신장하고 있는 것은 맞지요?

○ **장영철 ㈜위드이노베이션 부대표**
- 500억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러면 첫해는 얼마였고 두 번째 해는 얼마였습니까?

○ **장영철 ㈜위드이노베이션 부대표**
- 첫해는 8,000만원이었고 작년에 240억원이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1억원도 안 되는 매출이 1년 만에 약 300억원 가까이 늘어나고 올해는 벌써 자회사까지 하면 800억원 가까이 됩니다. 제가 무엇을 여쭤 보려고 하느냐 하면 종업원도 200명 육박합니다. 그렇지요?

○ **장영철 ㈜위드이노베이션 부대표**
- 예, 맞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지금 현재 종업원이 몇 명입니까?

○ **장영철 ㈜위드이노베이션 부대표**
- 240명 정도 됩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200명이 넘었습니다. 2년 전 처음 출범할 때 몇 명으로 시작했습니까?

○ **장영철 ㈜위드이노베이션 부대표**
- 40명 정도로 시작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이것이 굉장히 급신장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돈도 많이 벌고 종업원 수도

늘리고 매출이 신장하면 사회적 책임을 느껴야 된다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장영철 ㈜위드이노베이션 부대표**
- 예, 동의합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렇습니다. 이것이 간단치 않은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이 사안의 심각성이 어디에 있냐 하면 2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보안 점검에서 걸리지 않은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전부다 걸려 있고, 두 번째는 대부분의 해커들이 사업자에게 돈을 뜯기 위해 사업자에게만 협박을 하는데 이번 사건의 특징은 피해자 4,817명에게 협박문자를 보냈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특이한 사건입니다. 그 협박문자를 받은 소비자들이 '여기어때'를 이용했던 소비자들의 불안한 심리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것이 사생활이기도 하지만 프라이버시가 전혀 지켜지지 못하고 정말 창피하기 짝이 없는,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받은 사람이 상당한 불쾌감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범죄 자체가 굉장히 악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보호를 못해 주면서 돈 벌기에 급급했다는 이야기밖에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보도 내용도 전 국민이 다 알게 됐습니다. 여기에 어느 정도의 책임을 느끼십니까?

○ **장영철 ㈜위드이노베이션 부대표**
- 그 부분 저희가 미흡한 점이 많았다고 저희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자기들 상품을 이용한 고객에게 끝까지 애프터서비스는 못해줄망정 그 고객이 느꼈을 당혹감과 불안감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정말 기업이 반성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 점을 먼저 지적하고 싶고, 안 걸린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안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말씀을 제가 먼저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연간 광고비 어느 정도 지출하지요? 마케팅 이런 것 빼고 광고….

○ **장영철 ㈜위드이노베이션 부대표**
- 광고비는 작년에 100억원 정도였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올해 상반기에만 얼마 지출했습니까?

○ **장영철 ㈜위드이노베이션 부대표**

- 상반기에는 40억원 정도 됩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올해 100억원은 넘어가겠네요?

○ **장영철 ㈜위드이노베이션 부대표**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보안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 **장영철 ㈜위드이노베이션 부대표**
- 올해 약 17억원 정도 됩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러니까 사고가 나지요. 고객센터 상담원들에게 개인정보 DB를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고 했는데 고객센터 상담원에 대해서 정보보안교육 합니까?

○ **손정수 ㈜위드이노베이션 리스크관리팀 과장**
- 상담원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에게 연 1회 이상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어떤 내용으로 시간 기준으로 얼마나 합니까?

○ **손정수 ㈜위드이노베이션 리스크관리팀 과장**
- 시간은 연 1회 2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1년에 2시간 합니까?

○ **손정수 ㈜위드이노베이션 리스크관리팀 과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2시간 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손정수 ㈜위드이노베이션 리스크관리팀 과장**
- 저희가 올해 보안사고 이후에도 6월에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했었고 9월에 1회 정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김석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모든 분야에 걸쳐 다 위반되어 있습니다. 보안시스템 문제뿐만 아니라 보안의식도 형편이 없습니다. 경영진, 보안 관계자 할 것 없이 지금까지 개인정보 유출사고, 해킹 이런 것들을 많이 다루어 봤는데 ㈜위드이노베이션처럼 이렇게 모든 분야에서 문제가 생겨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례가 없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쭉 가셔서, 제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미안한 이야기지만 "이건 종합불량선물세트다" 그것을 심각하게 느껴야 합니다. 아까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개인의 숙박정보입니다. 물론 그것이 일반관광시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젊은 사람들이 이용한 기록일 수도 있는데 그것은 어떤 경우든 대단히 민감하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 **장영철 ㈜위드이노베이션 부대표**

- 예, 맞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숙박정보 자체가 아주 민감한 정보입니다. 그것이 유출돼서 이용자에게 협박문자까지 가고 이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한 법 위반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십시오. 이번에 사고가 발생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고 또 소명도 하고 어떤 것은 수용이 됐지만 불수용 됐습니다. 여기 의견 낸 것을 보면 미안한 이야기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여전히 미흡합니다. 크게 느낀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대표자로 나왔으니까 이 사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종합적으로 이야기해 보십시오.

○ **장영철 ㈜위드이노베이션 부대표**

- 이번 사건을 통해 저희가 한 부분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뭔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참고로 이번 사건으로 인해 저희 회사가 거의 존폐 위기에 있을 정도로 사업 자체는 많이 안 좋은 상황입니다. 저희가 봤을 때 저희 스스로도 부족한 점이 많았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사 과정에서부터 많이 느꼈습니다. 저희가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들과 관리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부분, 저희 경영진부터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사업연혁이 짧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핑계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미리 준비하고 갔었어야 되는데 한편으로 저희 스스로 안타까운 부분이 이런 것을 다 준비하고 가면 제일 좋겠지만 사실 여력상 이런 부분들이 다 준비하고 가기에는 지식도 부족했고, 저희가 이런 것을 다 알고 있었다면 미리 준비할 수 있었는데 저희 스스로가 부족했던 점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것은 어폐가 있습니다. 장영철 부대표 정보산업학과 출신이지요?

○ **장영철 ㈜위드이노베이션 부대표**

- 예, 맞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정보산업학과면 무엇을 전공합니까? 무엇을 배우지요?

○ **장영철 ㈜위드이노베이션 부대표**
- 데이터 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배웁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정보보안을 핵심으로 배울 것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이것을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경영이나 다른 쪽 전공하신 분이 아니라 정보산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이나 의견 제출한 것을 보면 지금도 '운이 없어서 사고가 났다' 이런 인식이 엿보인다는 것입니다.

○ **장영철 ㈜위드이노베이션 부대표**
- 그런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회사가 커지기 전에 이런 부분으로 인해 저희 스스로 다시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이번 기회로 저희가 저희 서비스뿐만 아니라 업계에도 경각심을 일으켰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사업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지금 대표자도 그렇고 정보보호책임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완전 무지한 상태입니다. 사고가 나도 진즉 났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야기해서 개선이 될까 싶습니다. 대표자도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고 시스템도 어느 것 하나 완전히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 욱 부위원장**
- 아까 말씀하실 때 계획되어 있던 모든 신규 프로젝트를 중단하고서 개인정보보호 인프라 구축과 솔루션 도입에 인력을 다 투입하셨다고 했는데 실제 여기에 투입된 예산이 얼마나 되고 보강된 인력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 **장영철 ㈜위드이노베이션 부대표**
- 전체적으로….

○ **손정수 ㈜위드이노베이션 리스크관리팀 과장**
- 그것은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 **허 욱 부위원장**
- 예.

○ **손정수 ㈜위드이노베이션 리스크관리팀 과장**

- 일단 보안 쪽에는 CISO 영입부터 해서 2명 정도 더 보강이 됐습니다. 추가적으로 1명 더 충원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ISMS 인증을 준비하면서 관련해서 보안 쪽, 처분사유로 나왔던 망 분리나 관리자 페이지 내에 있던 개인정보들을 다 안심번호나 또는 IDC에 있던 그런 물리적인 환경을 AWS 쪽으로 옮기고, 추가적으로 보안솔루션들을 다 도입해서 보안 쪽에서는 충실하게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허 욱 부위원장**
- 그 부분 교체하는데 혹은 보완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 **손정수 ㈜위드이노베이션 리스크관리팀 과장**
- 예산은 저희가 계속 준비하고 있는 단계라서 구체적으로 얼마가 들었다고 아직 파악은 안 됐는데 지금 모든 인프라를 AWS, 아마존 웹서비스로 이전하는데도 비용이 상당히 들었고 그리고 장비도입이나 인력채용 쪽에서도 상당한 비용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 **허 욱 부위원장**
- 예산 책정을 얼마로 했는데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된다는 것 없이 보완하고 있다는 것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 **장영철 ㈜위드이노베이션 부대표**
- 이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예산을 정해 놓고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들은 다 도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비용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솔루션이 어느 정도 비용이 될지 모른 상태에서 이 정도만 쓰자라고 하기보다는 현재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최대한 보안 쪽에 투자하자,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약 10억원 이상 들었고 앞으로 더 들 예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허 욱 부위원장**
- 진술 내용 가운데 기존의 모든 신규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여기에 보강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조치가 제대로 취한 것 같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브랜드 가치가 떨어질 것을 우려해서 광고를 오히려 훨씬 더 강화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 **장영철 ㈜위드이노베이션 부대표**
-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과 다르게 현재 저희 개발인력들이 이번 사건 이후로는 다 개인정보보호와 ISMS, 망 분리, 보안솔루션 도입 여기에 다 투입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런 것이 도입되려면 저희 서비스나 인프라 구조가 다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다 집중하고 있습니다.

○ **허 욱 부위원장**
- 연간 광고비 집행하는 것 하반기에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 **장영철 ㈜위드이노베이션 부대표**

- 수정되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광고라고 하시면 마케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허 욱 부위원장**
- 광고와 마케팅 포함해서 전체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 **장영철 ㈜위드이노베이션 부대표**
- 저희가 현재 하반기를 본다면 약 20~30억원 정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 **허 욱 부위원장**
- 자본금이 3억원이지요?

○ **장영철 ㈜위드이노베이션 부대표**
- 예, 맞습니다.

○ **허 욱 부위원장**
- 설립자본금 3억원에 매출이 240억원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누적적자가 얼마쯤 됩니까?

○ **장영철 ㈜위드이노베이션 부대표**
- 200억원 조금 넘습니다.

○ **허 욱 부위원장**
- 200억원 대의 누적적자, 현재 집단소송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단소송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추가로 자금을 얻어서 이런 정도의 예산 투자라든가 이용자 보호가 가능하겠는가라는 것에 대한 상당한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영철 ㈜위드이노베이션 부대표**
- 그 부분은 저희는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것을 잘하기 위해 전문컨설팅업체와 보안업체를 통해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있고, 저희가 시스템이 큰 규모라기보다는 제도나 장치가 미흡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완이 잘 된다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회사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대해 저희의 인식도 많이 바뀌었고, 이번 계기로 저희 스스로도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거기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 **허 욱 부위원장**
-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이 부분에 관련된 중요도를 인정한다는 것은 명확하다는 것이지요?

○ **장영철 ㈜위드이노베이션 부대표**
- 예, 맞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추가로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위반사항을 보면 열거를 일일이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개인정보보호조치 접근통제 위반, 또 취급자가 안전한 인증수단이 적용되지 않았고, 해커 침입 차단, 탐지시스템, 특히 탐지시스템 설치가 제대로 된 수준의 탐지시스템이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컴퓨터 망 분리가 미적용 됐습니다. 개인정보 그다음에 개인정보보호 조치 접속기록 6개월 보관하게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보안책임자가 아니시라니까….

○ **장영철 ㈜위드이노베이션 부대표**
- 내용은 확인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정기점검 월 1회 이상 받아야 한다는 것도 다 의무 위반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 **장영철 ㈜위드이노베이션 부대표**
- 예, 알고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다음에 암호화되어 있어야 하는데 비밀번호가 평문으로 저장되어 있고, 또 유효 개인정보가 1년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하는데 그것도 안 되고 있고 등등 무수히 많은 위반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제가 심각하게 보는 것이 이것은 보안의식이 취약하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상담직원에게 파일 다운로드 권한을 부여했지요?

○ **장영철 ㈜위드이노베이션 부대표**
- 예.

○ **김석진 상임위원**
- 인사이동을 해서 거기에 더 이상 접근할 수 없게끔 차단해야 하는데 인사이동 시 지체 없이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 **장영철 ㈜위드이노베이션 부대표**
- 예.

○ **김석진 상임위원**
- 이런 부분들은 도대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습니다. 고시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 **장영철 ㈜위드이노베이션 부대표**
- 그 부분은 조금 더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 **김석진 상임위원**
- 설명해 보십시오.

○ **장영철 ㈜위드이노베이션 부대표**
- 저희가 서비스를 할 때 업무분장이 하나를 명확하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 업무를 같이 병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회사가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세팅된 것이 아니라 업무를 하다 보니 양이 많아져서 예를 들어 업무를 나눠 주고 병행하는 업무가 있었는데 고객센터에 대한 시스템을 담당하는 분이 다른 업무를 맡게 됐습니다. 다른 업무를 맡게 되는 과정에서 그 업무도 한 동안 병행하자고 내부적으로 회의에서 업무를 부여하고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방금 말씀 주셨던 그 부분은 다른 업무를 보는데 왜 이 권한을 줬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런데 해커가 누구를 통해 들어갔습니까? 바로 인사이동이 됐는데도 아직도 로그권한을 갖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해커가 침입한 것 아닙니까?

○ **장영철 ㈜위드이노베이션 부대표**
- 예. 그분도 고객센터 업무를 계속 보고 있었던 부분이라서 보지 않았던 것을 삭제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계속 업무를 보고 있었던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침입탐지, 침입차단시스템도 본인 진술서를 보면 사업자는 기본사양을 다 갖춘 것을 적법하게 설치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전문기업이 제공한 시스템이 아닙니다. 소위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저급의 싼 것을 설치하지 않았나, 우리가 볼 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IP주소를 재분석해서 외부침입이 있었는지 바로바로 탐지가 되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인정하십니까?

○ **장영철 ㈜위드이노베이션 부대표**
- 부족함이 있다는 부분은….

○ **김석진 상임위원**
- 1년 만에 수백억 원씩 급신장하는 회사에서 특히 아주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숙박정보인데 그런 정보를 다루는 업체가 보안의식이 그렇게 소홀해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내릴 수 있는 행정처분의 가장 최상위 행정처분을 내려도 마땅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개인정보를 가지고 사업하는 업체가 우후죽순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보안의식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 안 됩니다. 완전히 노출을 다 시켜서 소비자들이 얼마나 많은 직접적인 협박을 받는 문자 메시지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철저하게 반성하시고 당장 돌아가시면 보안시설을 완비하는 데 많은 투자를 하십시오. 이런 것을 늘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돈 벌 자격이 없습니다. 그것을 엄중하게 말씀드립니다.

○ **장영철 ㈜위드이노베이션 부대표**

- 명심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표 위원님!

○ **표철수 상임위원**

- 저는 따로 확인할 사항이 없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더 이상 질문할 것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이용자보호라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서 우리가 비식별조치를 통해서 개인정보를 산업적으로 활용하는 데도 큰 걸림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사업하신 내용에 있어서 특히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철저하게 깨달으시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가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그 조처에 완벽성을 저에게 한번 입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장영철 ㈜위드이노베이션 부대표**

- 알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드이노베이션사의 의견진술 및 의견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진술인께서는 자리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장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진술인 퇴장)

의견청취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 제출이 필요한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청취를 끝내고 이어서 김재영 국장님은 <의결안건 나>에 대한 시정조치(안)를 보고해 주십시오.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시정조치(안)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명령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64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위반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평일 중앙일간지 1회, 홈페이지 1주일 이상 공표하도록 하고, 세 번째로 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정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제출토록 명령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3 제1항제6호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분실·유출된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 산정 절차는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드이노베이션의 관련 매출액은 '여기어때' 서비스 관련 매출을 위반행위 관련 매출로 하고, '15년 9월 21일 사업개시 이후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하여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을 약 165억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세부 산정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징금 산정을 위해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느냐, '중대한 위반행위', 또는 '보통 위반행위'로 보느냐에 따라 기준금액 산정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무처에서는 <제1안>으로 위반행위 중대성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아 관련 매출액의 1,000분의 27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방안과 위반행위 중대성을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아 관련 매출액의 1,000분의 21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방안 2가지 안을 검토 보고드립니다. 세부 판단기준 및 적용 근거는 아래 <표> 및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준금액 산정된 결과를 토대로 해서 필수적 가중·감경 및 추가적 가중·감경을 거쳐 저희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액을 2억 6,800만원,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하는 경우는 2억 800만원으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과태료 부과(안)입니다.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1,000만원을 각각 적용하고자 합니다. 위반행위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하나와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파기 등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 적용하고자 합니다.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위반행위가 3개 항목, 9개 세부기준으로 매우 많기 때문에 기준금액의 50%를 가중하고 특별히 감경할 사유는 없으므로 감경하지 않겠습니다. 이에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은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징계 권고를 하고자 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69조의2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관련하여 ㈜위드이노베이션의 대표자 및 책임 있는 임원을 포함한 책임자에 대해 징계할 것을 권고하자입니다. 권고를 받은 사람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2016년 3월 22일 신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시정조치(안)를 통보하고 금년 말까지 시정조치 이행사항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세부내용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쳤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8페이지 두 번째 시정명령 있지 않습니까? 통상 시정받은 사실을 공표합니다. 여기도 다른 사례와 마찬가지로 중앙일간지 1회, 홈페이지 1주일 이상인데 이 홈페이지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요즘 PC용 홈페이지가 주로 있고, 모바일 상에도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모바일상의 홈페이지에도 이것이 적용됩니까?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사무국에서는 현재까지는 인터넷 PC상 홈페이지를 상정하고 시정명령을 하고자 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여기어때’ 앱이 어디에서 구현되는 것입니까?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모바일에서 주로 구현됩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거기 이용자들에게도 알려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위원님 지적해 준 내용을 반영해서 PC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의 경우에도 이용자에게 시정 명령받은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방법도 일간지나 PC 홈페이지가 아니라 모바일 전용 홈페이지가 있고 앱이 있습니다. 웹과 앱, 앞으로는 여기도 다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겠지요? 개인정보 유출 같은 경우 앱 사업자들 유출이 많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개인정보보호에 취약합니다. 그것은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지요?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예, 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수정 의결에 포함시키겠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렇게 제안하겠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일간지는 하나만 하면 됩니까?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저희가 하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요즘 젊은 사람들 미디어에 접하는 속성으로 볼 때 중앙일간지에 하는 것 못지않게 이런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 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예, 알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일간지에도 해야겠지만 젊은 사람들의 성향으로 볼 때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니

까 그것은 철저를 기하십시오. 다른 분 또 의견 주시지요.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 욱 부위원장

- 오늘 안건에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작년에 인터파크가 과징금 부과받은 다음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이쪽도 집단소송이 제기된 상태이기 때문에 고의나 과실 여부 본인들이 줄이기 위해 행정소송이 예상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지금까지 사업자가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방통위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대부분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지연하거나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어때'의 경우에도 저희가 시정조치(안)를 처분하면 행정소송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만 아직 저희가 예단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 허 욱 부위원장

- '15년도에 설립된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에 이미 자본잠식이고, 누적적자가 200억원이 넘는다면 추가 투자유치가 굉장히 시급한 상황인데, 집단 손해배상이나 시정조치에 따른 과징금에 대해 제대로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우려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사건 자체가 사회적 충격이 워낙 컸고, 거기다가 숙박예약 어플의 특성상 민감한 사생활 정보 그리고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된 점을 고려하면 강력한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덧붙여 보완되어야 할 사항들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번 침해사건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이나 보안체계에 대한 기술지원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 천지현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조사과정에서 홈페이지 취약점 점검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지원하고 컨설팅을 같이 병행을 했습니다.

○ 허 욱 부위원장

- 의견진술을 들었습니다만 신생 벤처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모르고 시작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 건을 계기로 해서 관련 업계에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보안체계 재정립이나 취약점 점검을 위한 기술지원도 KISA를 통해 가능하다는 것을 알리고 그런 기술지원 프로그램을 좀 더 활성화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면 저희가 예방적 차원에서 다음에 안건으로 상정하겠습니다만 금년 6월 22일부터 7월 20일까지 숙박, 렌트카, 영화예매, 커피주문 등 O2O사업자 13개 분야에 대해서 각각 1위 또는 2위에 해당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저희가 정보통신망법 준수 여부에 대해서 실태점검을 했습니다. 7개 위반사업자가 나왔습니다만 이런 실태점검을 통해 사업자들이 사전적으로 보안 투자를 더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정보통신망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자율규제 점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현재 쇼핑몰, 통신사

영업점 2개 분야를 대상으로 자율규제 체크리스트를 100여개 항목씩 만들어서 시범 적용하고 있습니다. 시범 적용 결과를 토대로 해서 향후에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 처음으로 4억원 이상의 예산을 확보해서 자율규제사업을 전반적으로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 **허 욱 부위원장**
- 예, 알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최근 3년간 과징금 처분받은 적이 없으면 100분의 50 감경이 필수사항입니까?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표철수 상임위원**
- 마음 같아서는 감경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을 통한 사업으로 자신들의 수익을 창출하는 이런 사업들은 수익 창출의 기반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특히 건전하게 인터넷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개인정보보호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까 진술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 중에서도 확인됐듯이 기본적으로 대학에서 그런 공부를 하신 분들이 그것에 대한 인식을 확실히 하지 않고 일단 돈 버는 사업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최대한 징벌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런 일이 사회적으로 최소화 되도록 조처를 하는 것도 위원회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더 이상 발언 없으시지요?

○ **고삼석 상임위원**
-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보면 <제1안>, <제2안>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추가적 가중·감경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선택사항이지요?

○ **천지현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재량으로 조사에 협조한 경우 30% 이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위원회 구성이 늦어져서 밑에 참고표시가 있지만 벌써 범인이 검거되고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추징금까지 다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뒤늦게 한 것입니다. 물론 조사기간도 있지만 늦어진 것도 있지요?

○ 천지현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리고 과징금이 개인적으로 매우 중한 위반행위로 해서 <제1안>을 생각합니다만 이래도 최종 과징금이 2억 6,000만원, 반올림해도 2억 7,000만원입니다.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뒤늦게 솜방망이 처분을 했지 않느냐?' 이런 비판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가적 가중·감경, 이 사안은 우리가 뺄 수 있으면 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추가적으로 가중·감경을 우리가 하지 않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천지현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그런데 조사에 협조한 경우에는 유출되고 나서 자진신고를 했고, 자진신고를 빨리 했기 때문에 저희가 경찰청과 조사해서 해커를 검거한 것들은 조금 판단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표 위원님께서는 최대한 세게 하고 싶다고 하는데 지금 세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제가 역으로 그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보고드리면 사업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컴퓨터 시스템을 폐기한다면 해커를 검거할 수도 없는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동안 조사에 협조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임의적 감경해 왔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 허 욱 부위원장
- 표 위원님은 <제1안>을 이야기 하시는 것이지요?

○ 표철수 상임위원
- 당연하지요.

○ 허 욱 부위원장
- 저도 <제1안>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제1안>인데 추가적 감경 20%를 적용해 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 **허 욱 부위원장**

- 사무처에서 자료 협조에 관련된 사안들이 있었다고 하니까 <제1안>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제1안>으로 가고, 가중·감경은 없는 것으로 하자는 것입니까?

○ **허 욱 부위원장**

- 아닙니다. 저는 가중·감경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제1안>대로 하자는 말씀이지요?

○ **허 욱 부위원장**

- 당초 사무처 안대로….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러니까 사무처 판단에 따르자는 것이지요?

○ **허 욱 부위원장**

- 예.

○ **표철수 상임위원**

- 그런데 이런 사안이 발생했으면 통상 숨기려고 하는 업자도 있겠지요. 그러나 원래 신고하는 것이 의무 아닙니까?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 **표철수 상임위원**

- 가장 기본적인 의무지요?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예.

○ **표철수 상임위원**

- 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했다고 해서 추가 감경해 줍니까? 개인정보에 관한 것은 일단 다른 사안과는 달리 예를 들어 상품을 판매하다가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문제와 숙박업소의 개인 정보 유출은 굉장히 다른 사안입니다. 추가 감경할 필요가 있겠느냐? 의무를 의무대로 이행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이 건에 관해서는 온정적으로 그 부분을 감안해 줄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이렇게 하시지요. 저희가 현행 법규 내에서 제재를 하다 보니까 관련 매출액에 얼마 해서 매우 중한 위반으로 봐서 과징금을 산출한 것이고, 거기에서 다른 위원님들 생각도 추가적으로 더 가중해야 하는데 가중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경 사안, 조사에 협조했다는 것은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그것을 아예 전혀 감경사유로 반영 안 할 수 없는 것 같고, 이것은 10% 정도까지 낮추면 어떻습니까?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위원님 말씀대로 관행적으로 20% 했는데 저희가 개인정보 유출신고를 해태하거나 미신고한 경우에 저희가 과태료가 3,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서 보면 가중·감경한 것이 신고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해 준 것이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고 위원님 말씀대로 10% 감경하면 3억 100만원이 될 것 같습니다. 미신고하고 과태료 3,000만원 내는 사업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유도하는 측면에서는 10%라도 감경해 주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 **천지현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말씀하신대로 10%로 결정하게 되면 과징금 금액은 3억 100만원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관례가 있으니까….

○ **김석진 상임위원**

- 저도 10% 감경에 동의하겠습니다.

○ **표철수 상임위원**

- 좋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수정한 내용이 있으므로 안건 내용 중 시정명령뿐만 아니라 과징금 금액까지 수정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추가로 자구수정 등이 필요한 경우 수정할 사항에 대한 자세한 문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7. 보고사항

가.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2022(안)에 관한 사항

○ 이효성 위원장

- <보고사항 다> '아름다운 인터넷세상 2022(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인터넷·스마트폰 등 스마트기기의 보급 증가로 국민들의 생활양식과 소통방식이 변화하고 편익도 증가하는 한편, 사이버폭력 등 역기능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인터넷 역기능에 대응하고 건전하고 안전한 인터넷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향후 2022년까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인터넷윤리 교육, 범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확대 등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2022」계획안을 수립·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경과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08년에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했고, 2015년에는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대책"을 수립·발표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2022」계획을 수립·발표하고자 하는 것은 향후 4기 위원회가 추진할 인터넷 정책과제를 담고 있는데 학계, 전문 교육기관이 자문, 교사, 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의 의견수렴 등 7회에 걸쳐 의견수렴을 했고, 8월까지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립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을 비전으로 삼아 2022년까지 100만 인터넷 윤리교육을 실시하여 전국민의 인터넷 윤리의식 제고를 정책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대 추진방향 및 전략으로 첫 번째, 사각지대 없이 촘촘한 계층별 인터넷 윤리교육, 국민 참여형·실천형 인터넷 윤리문화 확산, 민관 파트너십 확대, 지능정보사회의 새로운 윤리 이슈 기반 마련을 정하고, 14개 세부추진과제를 정하였습니다. 먼저 사각지대 없이 촘촘한 '계층별 인터넷 윤리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유아들의 올바른 인터넷 이용습관 형성을 위해 찾아가는 인형극 및 교구제작, 강사지원, 체험형 인터넷 윤리교육을 실시하고 초·중·고 청소년 대상 실천형·체감형 윤리교육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인터넷드림단(동아리 활동지원), 강사파견교육, 뮤지컬 공연 등 예술체험형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학생, 군인, 지역주민 및 학부모 등 성인을 대상으로 인터넷 윤리교육을 추진하고,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밥상머리 인터넷 윤리교육'을 확대하고, 강의식이 아닌 '실천노트'를 활용하여 실생활에 녹아든 교육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장애학생,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등 취약계층 대상 인터넷 윤리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특수학교의 교육환경에 맞는 장애 유형별 콘텐츠 개발 및 지역아동센터의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특수학교 330개교, 지역아동센터 310개 센터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전국의 교원리더(장학관, 장학사, 교장·교감) 등을 포함하여 오프라인 직무연수를 실시하고 학습지도를 위한 일반교원 온라인 직무연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인터넷 윤리교육 연간 추진 목표는 2022년까지 약 105만명을 저희가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국민 참여형·실천형 인터넷윤리 문화 확산을 추진하겠습니다. 인터넷윤리 및 사이버폭력 등을 주제로 아인세 주간 운영, 인터넷윤리대전, 언론공동캠페인, 인터넷드림 창작

동요제 및 음악제 등을 통해 올바른 인터넷 윤리문화 확산을 추진하겠습니다. 포털과 지하철 등 대중교통, 아파트 승강기 등 생활밀착형 홍보를 강화하고, 이용자 중심의 인터넷윤리 통합 포털을 구축하겠습니다. 현재 아름다운인터넷세상, 인터넷윤리문화 등 4개의 포털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를 ‘아름다운인터넷세상’으로 통합하겠습니다. 또한 악성댓글, 사이버폭력 등의 피해를 간접 체험할 수 있도록 인터넷윤리체험관 및 사이버윤리체험을 확대 구축 운영하겠습니다. 2022년까지 현재 세 곳에서 운영하고 있는 윤리체험관을 1개소 추가 구축하고, 사이버윤리체험관을 1개소 신규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민관 협력강화를 하겠습니다. 정부 주도에서 민·관 협업기반으로 인터넷윤리 의식제고 교육체질을 개선하도록 하고, 시청자미디어재단, 한국무선인터넷사업협회,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잡월드 등을 포함하여 유관기관과의 교육자원 공동 활용 등을 추진하고 협력 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지능정보화 사회의 새로운 윤리이슈 등 기반 마련을 위해서 전문가 정책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지능정보사회의 새로운 인터넷윤리기준, 교육과정 개발 운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18년부터 청소년 대상 인터넷윤리 예술체험형 공연을 더욱 확대하고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윤리교육도 새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2022(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쳤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인터넷 윤리교육을 2022년까지 100만명을 하겠다, 저는 200만명, 300만명으로 늘려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인터넷 윤리의식의 실종으로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13살, 14살 여중생들이 동료 친구를 폭행하고, 이런 것이 전부다 SNS상에서 그런 행위를 정당화시키고 자기들끼리 그것을 공유하면서 즐거워하고 쾌감을 느끼고 이것은 전부 인터넷 윤리의식이 실종된 것입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계획서에 보면 초·중·고 학생들의 각급 학교 인터넷 윤리의식 교육의 대상을 약 37만 3,000명으로 잡는데 저는 이것을 늘려야 한다고 봅니다. 성인들, 군인, 대학생, 지역주민이 57만명인데 초·중·고에 좀 더 역점을 두어야 하지 않느냐는 수정제안을 해 봅니다. 과장님, 100만명을 ’22년까지 5년간 교육시키는데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 박명진 인터넷윤리팀장

- 향후 5개년 예산은 잡고 있는데 일단 연간 계층별 교육에 30억원, 콘텐츠 개발에 3억원 그 다음에 홍보에 6억원 정도이고 체험관이나 캠페인 하는 것들이 6억원 조금 상회합니다. 그러다 보니 인터넷윤리 예산은 국회에서도 많이 공감하고 기재부에서도 공감해서 조금씩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는 1,000만을 목표로 했었으나 예산규모를 고려하여 100만으로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우리가 1,000만명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100만명으로, 10분의 1 국회에서 예산 안 주니까 깎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위원회의 역량을 집중시켜서 이 예산을 따내야 합니다. 국민들

에게 인터넷윤리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데 10분의 1로 깎였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기가 막힙니다. 정말 위원회 역량을 모아야 되고, 꾸준히 설득해 나가야 하고, 예산 주는 기재부에 우리가 설득을 집중해서 예산을 더 배정받아야 합니다. 그다음에 인터넷 윤리교육이 여러 군데 산재해 있지요?

○ 박명진 인터넷윤리팀장

- 각각의 부처에서 특성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인터넷윤리 관련해서는 우리 부처가 미래부에서 하던 것까지 전부 '17년부터 통합·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통합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각 부처에서 전부 인터넷 나름대로 더 많은 부처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예산이 중복되고 사업이 중복되면 국가 예산 낭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통합해서 하는 것은 잘 된 일인데 문제는 인력과 예산입니다. 인터넷윤리팀에 배정된 우리 직원이 몇 명입니까?

○ 박명진 인터넷윤리팀장

- 총 7명입니다. 거기에서 윤리사업을 하는 직원은 0.5명입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대한민국 인터넷 윤리교육을 시키는 주무부서가 미래부에서까지도 우리가 업무를 받아왔는데 담당관이 0.5명이라는 것은 정말 심각합니다. 위원회에서 역량을 모아야 한다는 심각성을 제가 지적해 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김석진 위원님 말씀에 200% 공감입니다. 그런데 유관기관 협력교육 확대, 예산도 어차피 없는데 교육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충 수도권이나 인구밀집지역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 박명진 인터넷윤리팀장

- 윤리교육의 특성은 윤리 대상을 선정할 때는 신청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교육청을 통해 이것을 전부 알렸을 때 학교별로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모를 통해서 다 하기 때문에 그 학교장의 마인드라든지 교사들의 적극성들에 많이 좌지우지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교육청, 특히 MOU를 맺으면 신청 학교 수가 100개 단위로 뛰고, 어디는 1개 학교이고, 시·도교육청별로 자발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개 폭이 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할 몫은 홍보를 널리 강화하고 교육청과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이것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교사의 품이 더 들어간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 **표철수 상임위원**
- 사실은 이런 교육이 결국은 교육기회가 취약한 대상들이 많지 않습니까?

○ **박명진 인터넷윤리팀장**
- 예, 맞습니다.

○ **표철수 상임위원**
- 농어촌이나 도서지역 이런 데가 많은데 이런 데 대한 것도 우리가 검토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교육청과 협조뿐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쪽과 협조를 하면 그런 방안이 더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자체도 우리가 담당하는 인력도 적고 예산도 없으면 잘 안 되겠지만 일단 우리가 목표는 분명히 세우고 그런 쪽으로 계속 더 추진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박명진 인터넷윤리팀장**
- 부연설명 잠깐 드리면 지자체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해야 하는 협력기관이어서 더욱 더 강화할 예정입니다. 취약계층 말씀하셨는데 사실 취약계층 예산을 계속 올렸습니다. 그런데 계속 잘려서 제로였고, '17년도부터 조금 할 수 있도록 조금의 여지가 생겼습니다. 학교 밖 아이들이라든가, 사실 학교 내 교육에 집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더 하고, 장애인은 장애 부위별로 특수교육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여기에서 다 답변하려고 하지 마시고 검토하면 되지요.

○ **이효성 위원장**
- 사실 이 문제는 영어식 표현을 하자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문제인데 사실 디지털 세상이 되면서 디지털 리터러시 문제가 교육의 핵심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교육을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나 정책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 문제인데, 이것은 정말 우리가 재정 당국을 강하게 압박해서라도 얻어내야겠지만 아마 우선순위에서 틀림없이 밀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우리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재원을 많이 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이어서 비공개 안건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시 50분 】

6-1. 의결사항

가.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임명 동의에 관한 건 (2017-30-161) (비공개)

○ 이효성 위원장

- 기타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의결안건 다> '2017년도 1분기 재난방송 미실시 방송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30차 회의의 정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 11시 02분 정회 】

【 14시 02분 속개 】

○ 이효성 위원장

- 차중호 의안·정책관리팀장, 성원 보고해 주십시오.

○ 차중호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전 회의를 속개한 관계로 국기에 대한 경례는 생략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2017년 제30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연이어 오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련 사업자가 많은 관계로 <의결안건 다> '2017년도 1분기 재난방송 미실시 방송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건'은 오후에 별도로 안건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다. 2017년도 1분기 재난방송 미실시 방송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건 (2017-30-163~171)

○ 이효성 위원장

- 그러면 <의결안건 다>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안건은 피심인 중 8개 방송사업자의 의견진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영관 방송정책국장님은 안건 내용 중 조사결과와 관련한 사항을 먼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40조의 재난방송 실시 의무를 위반한 방송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안)를 <붙임1>과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제안이유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재난방송을 실시하지 않은 방송사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안)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조사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재난 또는 민방위사태 발생의 예방·대피·구조·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난방송을 실시하도록 방송사에 요청할 수 있으며, 방송사는 정부가 요청한 재난방송에 대해 재난방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유 없이 재난방송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심위는 재난방송 실시 여부를 모니터링하여 방통위에 알려야 하며, 방통위에서는 그 결과를 토대로 실시 결과를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17년도 1분기에 기상청, 행정안전부 등은 총 53건의 재난상황을 KBS 등 68개 방송사업자에게 방송할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러한 재난방송 요청에 대해 방심위에서 모니터링한 결과 20개 방송사업자가 142건의 재난방송을 미실시한 것으로 방통위에 알려왔습니다. 사무처에서는 142건 중 실제 방송을 하였거나 방송구역을 벗어난 지역에 재난방송을 요청한 건수 등 18건을 제외하고 124건의 위반 의심행위에 대해 재난방송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 후에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를 실시하여 사업자의 의견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 사실조사 결과입니다. 먼저 피심인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피심인 대상사업자는 방송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12개 지상파방송사업자와 같은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은 1개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 그리고 2개 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서 일반현황은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방송 사업자별 재난방송 실시 결과입니다. 먼저 연합뉴스 1건, MBC강원영동 1건, 경인FM 1건, 국악방송 1건 광주영어방송 8건 이렇게 각각 재난방송을 미실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KBS 등 11개 방송사업자는 112건의 재난방송에 대해 재난관리기관이 제공하는 발표내용 그대로 방송하지 않았습니다. 재난내용과 지역 등을 명시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재난 내용을 수정하여 표현하거나 지역을 포괄 또는 일부 누락한 채 방송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자 의견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MBC강원영동, 국악방송, 광주영어방송 3개사는 요청받은 재난방송을 실시하지 않은 점을 인정하고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경인FM은 방송구역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사실상 방송이 도달하지 않는 지역이라 해당 지역에 대한 재난방송을 미실시했다고 소명하였습니다. 연합뉴스TV는 재난방송을 실시하였다고 주장하였지만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KBS, MBC, SBS 등 11개 사업자는 112건에 대해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함으로써 한정된 시간과 시청자 편의 등을 고려하여 방송을 하였으며, 이는 재난방송의 효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재난방송을 실시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특히 SBS는 풍랑경보 등 일부 사항이 급박성이 없어 적절한 표현으로 방송하였으며, 그간 이러한 방송이 관행으로 굳어져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것은 신뢰보호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사업자별 구체적인 의견은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재난방송 인정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된 쟁점은 재난관리 주관기관에서 제공한 발표내용을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난상황을 임의로 수정하여 표현하고, 구체적인 지역명 대신 포괄적인 지명으로 대체하거나, 재난지역 전부를 나열하지 않고 일부 지역은 누락한 채 방송한 것이 재난방송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되겠습니다.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논의된 전문가 의견을 보고드리겠

습니다. 재난관리 주관기관에서 제공한 정보(재난발령시간, 재난명, 재난지역, 행동요령, 발령기관) 이러한 부분을 시청자에게 방송하여야 하나 최소한 재난명과 재난지역은 명확하게 방송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풍랑경보를 '물결이 거세다', 강풍경보를 '바람이 세다' 등으로 대체하여 표현하는 것은 재난상황을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아니므로 재난방송으로 보기 어렵고, 재난관리기관에서 발표한 구체적인 지명 대신 '동해안', '내륙지역' 등으로 지역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표현한 방송도 재난방송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다만, 지역명을 나열하면서 일부지역을 누락하거나 지도상 불분명하게 표시하는 경우 또는 해상지역을 표현하면서 포괄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일단 마치고 사업자 의견진술을 듣고 나신 다음에 추가적인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의견진술을 요청한 피심인 8개 방송사업자 측 관계자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청취에 앞서 장내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7년도 1분기 재난방송 미실시 방송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전 당사자 의견진술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방송공사, ㈜SBS, 부산문화방송㈜, ㈜KNN, ㈜KBC, ㈜경인방송, (재)국악방송, (재)광주영어방송재단 등 의견청취 관련 관계자 입장하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진술인 입장)

멀리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17년도 1분기 동안 실시한 재난방송에 대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재난방송 실시 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를 알려옴에 따라, 그 결과를 토대로 실시 결과를 점검하던 중 재난방송 실시 규정과 관련하여 위반 소지가 있음을 인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위반 의심행위에 대해 관련 자료제출 등을 요청하여 검토하고, 재난방송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검토한 결과, KBS 등 15개 방송사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위반 소지를 확인하였기에, 지난 8월 11부터 21일까지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를 하여 사업자의 소명의견을 접수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해당 행정처분에 앞서 의견진술을 요청한 한국방송공사, ㈜SBS, 부산문화방송㈜, ㈜KNN, ㈜KBC, ㈜경인방송, (재)국악방송, (재)광주영어방송재단으로부터 의견진술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참석자를 확인하겠습니다. 한국방송공사 대외협력실장이신 이강덕 님 맞습니까?

○ **이강덕 한국방송공사 대외협력실장**

- 예.

○ **이효성 위원장**

- ㈜SBS 정책실장님 신경렬 님 맞습니까?

○ **신경렬 ㈜SBS 정책실장**

- 예, 맞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부산문화방송㈜ 상무이사이신 김용성 님 맞습니까?

○ **김용성 부산문화방송㈜ 상무이사**
- 예, 맞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KNN 경영본부장이신 김호진 님 맞습니까?

○ **김호진 ㈜KNN 경영본부장**
- 예.

○ **이효성 위원장**
- ㈜KBC 상무이사이신 김영락 님 맞습니까?

○ **김영락 ㈜KBC 상무이사**
- 예, 맞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경인방송 사장이신 권혁철 님 맞습니까?

○ **권혁철 ㈜경인방송 대표이사**
- 예, 맞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재)국악방송 사장이신 송혜진 님 맞습니까?

○ **송혜진 (재)국악방송 사장**
- 예.

○ **이효성 위원장**
- (재)광주영어방송재단 사장이신 박진관 님 맞습니까?

○ **박진관 (재)광주영어방송재단 사장**
- 예.

○ **이효성 위원장**
- 의견청취에 앞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견청취는 위원회 운영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만큼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한국방송공사부터 ㈜SBS, 부산문화방송㈜, ㈜KNN, ㈜KBC, ㈜경인방송, (재)국악방송, (재)광주영어방송재단을 대표해서 오신 분들께서 이번 과태료(안) 관련 5분 정도의 모두 발언을 하신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먼저, 한국방송공사 대외협력실장이신 이강덕 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표철수 상임위원**

- 위원장님, 잠깐 발언 듣기 전에 한 가지만 실무진에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MBC가 위반건수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MBC는 의견진술할 의사가 없다고 해서 안 온 것인지, 우리 실무진이 요청을 하지 않은 것인지….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전부다 의견진술 절차가 있는 것을 다 알려줬고, 그중에서 기본적으로 서면으로 다 제출하고 구두까지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업자만 참석을 한 것입니다. MBC에도 알려 줬습니다.

○ **표철수 상임위원**

- MBC는 구두 진술 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 **표철수 상임위원**

- 확인했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그럼 한국방송공사 대외협력실장이신 이강덕 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강덕 한국방송공사 대외협력실장**

- 먼저 재난 주관방송사인 KBS가 재난방송 관련해서 이렇게 지적을 받게 된 상황까지 이르게 된 데 대해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회사를 대신해서 한번 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저희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저희 차원에서는 이런저런 설명을 드릴 내용도 있어서 자세하게 소명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가 주어졌기 때문에 간단하게 다시 한 번 지적받은 사항과 관련해서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크게 말하면 저희가 6건의 지적을 받았는데 그중에 1건은 지적이 객관적으로 잘못된 것 같고, 저희 쪽의 과실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5건 모두 다 풍랑경보와 관련된 내용인데 그것을 앞에서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도 있었습니다만 ‘풍랑경보’나 ‘풍랑주의보’라는 정확한 명칭을 쓰지 않고 그것을 풀

어서 쓰는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1월 20일 풍랑경보 발표되고 1월 30일 4차례에 걸쳐 풍랑경보가 발표됐는데 저희가 풍랑경보를 적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맞는 지적이시고, 다만 스크롤과 날씨 출연을 통해서 해상에 높은 물결이 일고 있음을 시청자들에게 충분히 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풍랑경보의 기준이 유의파고 5m 이상이므로 5m로 표기된 날씨 출연에 예상 파고로도 풍랑경보 위험성을 어느 정도 전달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1월 20일과 1월 30일에는 당시 강원도에 더 심각한 재난상황이 있었습니다. 대설주의보가 발효됐었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들의 삶과 그리고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재난방송을 실시하고 있어서 풍랑경보에 대해 저희가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다는 점을 설명드립니다. 1월 30일의 경우 아시다시피 설 연휴 마지막 날이어서 귀경길 교통상황에 그리고 대설주의보까지 겹쳤기 때문에 그쪽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인 탓에 풍랑경보에 대해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앞에서 잠시 설명을 드렸지만 2월 9일 한파경보의 경우는 저희가 지적을 당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자료를 조사해 본 결과, 재난방송 기준에 맞게 방송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소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기회에 저희가 재난방송 주관사이기 때문에 재난방송과 관련해서 저희의 계획을 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지난 경주지진을 계기로 재난방송과 관련된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통합디지털재난방송시스템을 구축했고 수시로 방송과 관련된 교육도 기자들을 상대로 실시하고 있고, 관련 회사에 매뉴얼도 새로 고쳤습니다. 특히 이것이 기상상황과 관련된 것은 TV보다도 라디오가 중요한데 라디오에서 새벽 4시 40분대 10여분간 ‘어업 기상통보’라는 것을 상세하게 어선들을 위해 하고 있고, 5시 직전에 5분간 또 기상상황을 생방송으로 매일 아침 새벽 두 차례 하고 있고, 매 시간마다 날씨를 라디오를 통해 기상상황과 관련된 것을 하고 있고 그 시스템도 저희가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더욱 철저히 하도록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월쯤에 저희가 완비할 예정인데 지금 디지털 시대이고 모바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재난 앱을 별도로 만들기 위해 작업을 한창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난방송 주관사이기 때문에 재난과 관련된 사항, 특히 지금은 자연재해 못지않게 또 인위적 재난에 대비할 상황도 있기 때문에 관련된 회사 내부의 시스템이나 규정들을 앞으로 철저히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SBS의 정책실장이신 신경렬 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경렬 ㈜SBS 정책실장**

- SBS의 정책실장 신경렬입니다. 먼저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된 재난방송 관련해서 이렇게 소명의 기회를 한다는 자체가 송구스럽습니다. 어떻든 방통위의 지적 이후 지난 1/4분기 집중 모니터 이후 집중 지적됨에 따라 내부적으로는 문자자동발생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해서 요청 즉시 방송 중에 재난방송 내용이 고지될 수 있도록 시스템 자체를 완벽하게 구축했습니다. 지금은 신속·정확성이 어울릴 수 있도록 정부 쪽의 요청이 있으면 바로 방송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7년 1/4분기 지적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이렇게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소명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는 거의 10년 이상 똑같은 방식으로 재난방송을 해 왔습니다. 요청에 따라 재난의 경중에 따라 방송사의 형식

요건을 갖추어서 같은 방식으로 10년 이상 해 왔는데 갑작스럽게 ’17년 1/4분기에만 집중적으로 수십 건이 위반 건으로 지적되면서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심지어는 지난해 정기국회 중에 방통위가 제출한 자료에도 SBS는 재난방송을 100% 시행한 것으로 자료가 제출이 됐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은 똑같이 재난방송을 해 왔는데 어떻게 해서 2017년 1/4분기에만 그렇게 다르게 지적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전히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2016년까지와 그리고 2017년 1/4분기부터 재난방송 기준이 달라졌다면 달라졌다는 내용을 저희들이 사전에 고지를 받았다거나 또는 정부 당국에서 예고를 했다면 분명히 거기에 맞춰서 재난방송을 했을 텐데 사전에 그러한 예고라든가 인지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재난방송의 효과를 제대로 거두기 위해서는 사전에 집중모니터링을 하더라도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제시를 해 줬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방송법에는 재난방송 형식에 대해서는 방송사에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재난의 경중에 따라서 특보나 속보, 또는 뉴스 자막, CG처리, 오디오 등등해서 방송사에 상당 부분 재량권 행사를 허용해 주고 있고, 거기에 따라 10년 이상 똑같은 형식으로 방송해 왔는데 갑작스럽게 ’17년 1/4분기에 10건 이상이 미실시됐다고 통보를 받음으로써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특히 이번에 지적받은 풍랑이나 강풍 같은 경우에는 1, 2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1, 2월에 대설경보나 주의보 같은 재난방송이 많이 요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방송을 하면서도 시간의 제약상 CG 표기라든가 또는 아나운서의 아나운싱만으로 넘어왔었고 그동안의 관례로 그런 부분들이 다 실시로 인용되어 왔었으나 이번에 그 부분이 집중적으로 단속이 되었습니다. 어차피 이 자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벌을 주는 자리가 아니고 그동안의 방식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자는 의미에서 본다면 이번 자리를 계기로 해서 방통위를 중심으로 해서 방송사들과 함께 앞으로 재난방송에 대한 신속·정확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좀 더 구체적으로 명기될 수 있는 기회로 활용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떻든 간에 이유를 불문하고 재난방송 건으로 해서 이렇게 나와서 설명드린 것 자체가 송구스럽고 지적 이후에 모든 시스템을 개선해서 지금은 요청 즉시 국민들에게 바로 재난소식이 전달될 수 있도록 개선됐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부산문화방송㈜ 상무이사이신 김용성 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성 부산문화방송㈜ 상무이사**

- 안녕하십니까? 김용성 부산MBC 상무이사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저희는 1건입니다. 먼저 이런 내용 때문에 나오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내용은 비교적 단순합니다. 저희는 재난방송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받으면 수동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2월 9일 풍랑경보가 일어났을 당시에 저희가 클라이언트 시스템을 막 업그레이드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한지 사흘 지난 상태였는데 그때 PC에 뜨지 않아서 저희가 인지를 못 했고, 익일 아침에야 뉴스투데이 시간에 기상정보 방송을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이전에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현재까지 단 1건의 문제없이 방송을 잘 시행하고 있고, 단순하게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그것을 미처 잘 체크를 하지 못한 과오가 있습니다. 또 보완책으로 문자를 보내 주신 것을 담당자들이

빨리 체크를 못한 과오도 있습니다. 저희는 평소에 열심히 재난방송을 실시하고 있고, 또 이런 단순한 실수가 있었다는 점들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선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KNN 경영본부장이신 김호진 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진 ㈜KNN 경영본부장**

- 안녕하십니까? 저는 KNN 경영본부장 김호진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재난방송 미실시 건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소명하게 되어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월 9일 저희들이 재난방송 클라이언트 시스템을 통해서 통보를 받고 그 실시 건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부산MBC도 마찬가지겠지만 지역방송은 아직까지 재난방송이 자동화 시스템으로 되지 않고 저희들이 수신이 되면 수동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날 시간이 6시 경 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보센터>라는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뉴스와 같이 가는 형태라서 하단 스크롤 자막이 흘러가고 있고, 또 다른 추가 하단 스크롤로 자막을 내기에는 생방송 진행과정에서 굉장히 방송사고 위험도 있어서 저희들이 그 시간대에 나가는 날씨뉴스를 통해 풍랑경보에 대해 같이 방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8시에 저희들이 메인 뉴스가 나왔는데 거기 로컬 뉴스에서도 날씨로 풍랑경보 내용을 처리해서 그때 저희들은 재난방송을 했다고 그렇게 소명했었습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정확한 지역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한번 더 특정해서 할 수 있도록 재난방송 매뉴얼을 별도로 만들어서 고지했고, 내부적으로도 그렇게 교육을 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유사한 사항이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고, 작년 9월에 일어난 경주 5.8도 지진이 일어났을 때는 드라마를 끊고 뉴스특보로 해서 지진상황을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재난 쪽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정책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난번 2월 9일에는 저희들이 생방송으로 하다 보니까 방송사고를 방지하는 방향에서 다른 측면으로 그렇게 특보를 내보내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저희들이 매뉴얼화해서 특히 재난방송 부분에 있어서는 시청자들이 피해가 나지 않도록 예방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2월 9일 미숙하게 일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KBC 상무이사이신 김영락 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락 ㈜KBC 상무이사**

- 김영락입니다. 이 자리에 서게 돼서 송구스럽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1건이 걸려 있습니다. 1월 20일 풍랑경보가 발효된 것을 7시 2분에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때 뉴스를 준비하고 있었고,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방송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서 저희들 그때 판단으로는 영상과 앵커가 나와서 날씨를 하는 것이니까 날씨에서 처리하면 좋겠다, 이것이

스크롤로 나가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겠다고 판단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은 날씨에서 지도하고 영상을 합쳐서 풍랑경보를 방송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가 지적된 것은 스크롤 처리를 못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들 명백한 오류입니다만 저희들 방송사가 판단했을 때는 이 스크롤 처리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때도 아래 뉴스자막들이 들어가고 있어서 2단 자막으로 처리해야 하는 그런 불가피성이 있어서 차라리 이것보다는 지도와 영상 날씨 캐스터의 멘트가 훨씬 더 효과가 있겠다, 그래서 그렇게 방송을 했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잘했다는 것은 아니고, 스크롤 처리를 못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매뉴얼에 위배된 것은 확실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따로 그 부분에 대해 소명할 것입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저희들 재난방송에 대해 인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도 더 효과적으로 장비도, 인력도 더 보강하겠습니다만 이런 문제에 대해 지역방송사 입장에서는 참 안타깝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저희들뿐만 아니고 지역에 있는 방송사들 대부분 다 그럴 것입니다. 재난방송은 무엇을 해도 다 그때그때 처리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처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번 일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선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나고 나서 지역방송에서 건의할 것들도 한두 가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아울러서 끝나고 난 다음에 건의할 시간을 주신다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그것은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경인방송 사장이신 권혁철 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혁철 ㈜경인방송 대표이사**

- 안녕하십니까? 앞에 말씀드린 분처럼 저희도 당국에 폐를 끼치게 돼서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이효성 위원장님 위시해서 위원님들에게 이런 자리에서 인사드리게 돼서 대단히 면구스럽습니다. 재난방송 관련해서 저희는 음악방송을 위주로 하는 FM인데 처음으로 이런 자리에 불려 나와 봤습니다. 무슨 법정의 피고인처럼 돼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을 벌여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깜짝 놀랄 충격적인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절대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이번에 실수를 저질렀다는 재난방송에서 미흡했던 것은 1월에 1건인데 굳이 변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불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파주의보를 방송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15개 시·군·구 강원도 양구, 인제, 경기도 동두천, 포천 이런 지역의 한파주의보인데 저희 방송권역으로 포함된 것이 15개 시·군·구 중에서 파주지역 한 군데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저희는 파주 고양 일대가 저희 방송권역임에도 불구하고 방송이 도달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2010년도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로 방송 원래 도달거리가 반경 1㎾로 되어 있는데 5㎾로 늘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서울 쪽으로 나가는 지상파 안테나가 꺾어져 있어서 실제 방송 전파가 도달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료를 준비해 왔는데 한파방송이 내려진 것이 이 지역이고 저희 방송권역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전파 도달거리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옛날 iTV 당시에도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서쪽으로만 넓혀져 있고 동쪽으로는 방송 전파가 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파주지역은 실제로는 저희 방송이 거의 도달하지 않고 있습니다. 15

개 시·군·구에 한파방송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희가 피소가 된 것입니다만 실제 전혀 영양가 없는 지역에 저희가 방송을 굳이 해야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자의적인 판단을 했습니다만 물론 방송하는 것이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방송 못한 것은 저희 불찰이고, 저희 같은 군소방송사 입장에서 재난방송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3,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되면 정말 방송할 의욕이 꺾일 정도로 엄청난 데미지를 입습니다. 잘 선처해 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다시는 이런 자리에 불러 나오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해서 방송 허가 내주신 당국에 제대로 부응해서 열심히 방송하는 방송사가 되겠다고 말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재)국악방송 사장이신 송혜진 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혜진 (재)국악방송 사장**

- 국악방송 송혜진입니다. 우선 재난방송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을 뵙게 돼서 죄송합니다. 저희 방송은 전체 직원이 60명 미만의 작은 방송으로서 전통음악만을 방송하고 있는 전문방송입니다. 보도와 시사해설 및 상업광고 등을 제외한 음악방송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생방송 프로그램에서는 보내주시는 재난통신문을 즉시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작 여건상 녹음방송이 불가피한 심야시간이나 일요일 주말 편성에서는 한 사람의 엔지니어가 감시체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진작 당국과 협의를 했고 그런 어려움을 인정해 주셔서 재난예방캠페인을 하면 어떻겠는가라고 하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역사 속에서 재난을 극복한 사례들을 모아서 재난예방캠페인을 만들었고, 저희가 불가피하고 긴급하게 재난방송을 편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재난예방캠페인을 한 것으로 보고를 했고, 그동안 그 사안에 대해 지적이 없으셨기 때문에 인정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음이 저희의 실수입니다. 저희가 지적받은 것은 일요일 오후 4시에 한파경보였는데 그날도 역시 통신문을 받은 후 재난예방캠페인으로 대체해서 책임을 다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지적받은 후에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현재 저희의 그런 인력구조 속에서 또 다른 방송처럼 자막으로 처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를 고심한 끝에 엔지니어도 이것을 긴급 편성할 수 있도록 텍스트를 소리로 전환시켜 주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제부터는 즉시 긴급 편성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저희가 소규모 방송으로서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다음에 또 재난예방캠페인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인지한 상황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 점을 잘 선처해 주시고 이것에 대한 대비도 확실하게 마련이 되어 있음을 이해해 주시고 선처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재)광주영어방송재단 사장이신 박진관 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진관 (재)광주영어방송재단 사장**

- 광주영어방송재단 사장 박진관입니다. 먼저 재난방송 미실시로 인해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게 된 데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방송국은 광주시에서 출자하는

출자기관으로서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영어방송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지적받은 것이 8건입니다. 건수가 굉장히 많은데 대부분 풍랑경보와 강풍경보 때문에 지적을 받았는데 저희들 방송권역이 광주광역시와 전남 동부 일부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번 풍랑경보나 강풍경보 협조요청이 온 것이 제주앞바다, 흑산도, 홍도, 전라남도 먼 바다 이런 식으로 받아서 저희들 실무자 측에서 생각할 때 우리 쪽과 방송권역이 너무 떨어진다고 해서 저희는 접수받았습니다만 국장 선에서 그것을 나름대로 판단해서 안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말 그대로 지역 커뮤니티 방송이라고 할까, 우리 지역 내륙 일부 광주시를 중심으로 한 그쪽으로 하는 방송이다 보니까 방송 소재를 선택하면서 이런 재난방송의 중요성에 대해 조금 저희들이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후회는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앞으로 더욱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이 8건 중, 특히 5건 같은 경우 저희가 인력이 18명입니다. 아주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는데 야간에는 밤 9시부터 아침 8시까지는 지금 직원이 없이 서울TV에서 영어방송을 수중계 받고 있고 자동녹음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온 것도 8건 중 5건 같은 경우 전부 심야에 온 것인데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대체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다는 점도 여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재난방송에 대해 저희들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이지만 저희 형편과 여건이 그렇게 됐다는 점에 대해 고려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위원님들께서 재난방송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처분과 관련하여 확인하실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은 손을 들어 저에게 의사표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우선 라디오방송 하시는 분들께 여쭤 보겠습니다. TV 같은 경우 밑에 하단 흘림자막으로 재난방송 문자가 나갑니다. 라디오 같은 경우 소리만 들리는 방송인데 재난문자가 왔을 때 어떻게 처리합니까? 국악방송 말씀해 주시지요.

○ **송혜진 (재)국악방송 사장**
- 저희는 음악이 나가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만 생방송 중인 경우에는 통신문을 받는 즉시 상황을 알립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음악이 나가고 있으면 음악을 중단시키고 재난문자를 읽습니까?

○ **송혜진 (재)국악방송 사장**
- 예, 주신 그대로 읽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예를 들어 진행자가 방송 진행 중에 문자메시지가 들어오면 문자를 읽으면 되지만 음악이 나가고 있으면 음악이 끊어지면 바로….

○ 송혜진 (재)국악방송 사장

- 음악을 약간 페이드다운(fade down)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2016년에 재난방송에 대한 제도가 강화됐다는 교육을 받은 후에 이것에 대해 더 긴밀하게 대응하기 위해 생방송 시간을 많이 늘렸습니다. 왜냐하면 녹음방송인 경우에는 대비가 참 어렵습니다. 생방송 시간을 늘렸고 그다음에 녹음방송인 경우 불가피한 점을 미리 상의를 드려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체 캠페인을 제작했던 것입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러면 재난방송 문자가 왔을 때 방송 진행자가 '우리 지역이 아니구나' 하면 그것을 빼도 된다는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까?

○ 송혜진 (재)국악방송 사장

- 저희 방송 같은 경우에는 통신문을 거의 그대로 읽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광주영어방송 같은 경우에는 광주지역만 청취권이지요?

○ 박진관 (재)광주영어방송재단 사장

- 예, 청취권입니다. 전남 동부 일부지역입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러면 다른 지역에 재난문자가 오면 어차피 도달이 안 되니까 그것을 무시할 수도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박진관 (재)광주영어방송재단 사장

- 저희 같은 경우 재난문자가 오면 저희들이 뉴스를 하루에 8차례 하고 있는데 뉴스시간에 다루고 그다음에 생방송 중일 때는 바로 고지하도록 통보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지역일 경우에는 담당자가 해당 편성국장에게 상의하게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 편성국장 선에서 생각하기에 '이것은 우리 지역이 아니다'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번에 풍랑경보나 강풍경보 같은 경우도 우리가 1월 말에 지적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후로는 우리가 먼 바다나 우리 지역이 아닌 지역에 대해 한번 이야기한 뒤로 2월부터는 안 넘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권혁철 사장님, 경인FM 같은 경우에 15개 지역에 한파경보가 났을 때 우리 지역만 방송하자, 이런 판단을 하신 것입니까?

○ 권혁철 ㈜경인방송 대표이사

-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인천에만 방송하고 있는데 부산의 풍랑주의보를 저희가 방송해야 할 아무런 실익이 없지 않습니까?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러면 과거에도 그런 식으로 재난문자 처리를 쭉 그렇게 해 왔습니까?

○ 권혁철 ㈜경인방송 대표이사

- 예.

○ 김석진 상임위원

- 어떻습니까? TV와는 달리 라디오 같은 경우 방송을 끊고 문자메시지를 읽어주어야 하니까 진행자나 또는 경영진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한 데미지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갖고 있습니까? 과하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재난문자를 처리하는 것이 라디오 매체의 경우 특성상 아무 멘트 없이 흘림자막으로 흐르는 TV와는 달리 라디오는 방송을 끊어야 하지 않습니까?

○ 권혁철 ㈜경인방송 대표이사

- 그렇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런 부분에 대한 고충이나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해 보십시오.

○ 권혁철 ㈜경인방송 대표이사

- 방송사마다 실정이 다르고 또 매체의 성격이 다른데 일방적인 통지문이 오는 것이라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정 부분 방송사 자율적으로 판단해야 할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통신문 전문을 보내실 때도 매체별 성격에 따라 어떻게 분류해 주시면 저희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방송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이번에 TV 쪽은 다 지상파가 나오셨는데 SBS 신 본부장님, 아까 10년 동안 관행으로 그런 부분은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긴급을 요하지 않는 예를 들면 태풍, 홍수, 지진이 아니고 풍랑, 강풍, 한파 이런 부분은 다가오는 정기뉴스 시간에 기상캐스터가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으로 쭉 관행적으로 해 온 적이 많았다는 말씀을 아까 제가 들었습니다.

○ 신경렬 ㈜SBS 정책실장

- 예, 계속 그렇게 해 온 것입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러면 10년간 그런 식으로 해 왔는데 갑자기 과태료를 매기겠다고 하니까 당황스럽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 신경렬 ㈜SBS 정책실장

- 예.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러면 그 전에 '12년에 개정이 됐습니다. 이 법조문이 반드시 재난문자를 처리하도록, 재난 방송 하도록 '12년에 개정되어서 쭉 모니터 활동을 하지 않고 관행으로 맡겨 뒀는데 작년 7월부터 모니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여러 차례 경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신경렬 ㈜SBS 정책실장

- 그 전까지 경고받은 적은 한 번도 없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작년 정기국회에서 방통위가 국회에 재난방송 실시 여부에 대한 박홍근 의원과 추혜선 의원의 질의자료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거기에 저희는 100% 이행한 것으로 국회에 제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 4/4분기 11월과 12월 사이에 2건이 미실시 건으로 지적이 돼서 그 건이 아마 똑같이 풍랑 건이었을 것입니다. 그 2건에 대해 이전에 해 왔던 식으로 해서 소명을 했는데 그 2건에 대한 소명도 방통위에서 받아들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로서는 뭐가 바뀌었다는 아무런 근거를 느낄만한 사전에 인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계속 '17년도에도 진행해 왔었고 그런데 갑작스럽게 '17년 1/4분기에 그렇게 집중적으로 미실시했다고 하니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당혹스럽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라디오 같은 경우 방송을 끊고 진행자가 읽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방송중단입니다. 1분 내외겠지만 그 시간만큼은 다른 정규방송을 못하는 것입니다. TV는 어떻습니까? 지상파TV 같은 경우 보도채널이나 다른 유료채널 같은 경우 종편은 상시 하단 스크롤바가 흐르고 있지요? 그런데 지상파는 어떻습니까? KNN도, 부산 MBC도, 광주방송도 마찬가지지요? 상시화면에 흘림자막은 없지요?

○ 김영락 ㈜KBC 상무이사

- 뉴스가 나갈 때는….

○ 김석진 상임위원

- 뉴스 할 때만 흘림자막이 있지요?

○ 김영락 ㈜KBC 상무이사

- 그렇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평상시에는 클린 화면이지요? ("예" 하는 의견진술인 있음) 종편과 다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상파 입장에서 그런 재난문자가 왔을 때 갑자기 하단 스크롤바를 주조에서 넣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 대한 부담 같은 것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강도를 이야기해 보십시오.

○ 신경렬 ㈜SBS 정책실장

- 저희가 어떻든 1/4분기에 지적을 받고 그 뒤에 우리가 4,000만원을 들여서 시스템 개발을 해서 지금은 오는 즉시 바로 자동 문자 발송으로 해서 하단 스크롤을 넣고 있습니다. 넣고

있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재난에 대한 경중의 여부가 전혀 판단이 안 됩니다. 일반인들 입장에서 봐서는 이것이 지진이 일어나는 것이냐 저 먼 바다의 풍랑이나 똑같이 하단 자막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일상적으로 거기에 일반 시청자들이나 국민들은 익숙해져서 재난의 경중에 대해 전혀 인지를 할 수 없는 일종의 양치기 소년이라고 할까요, 재난이라면 뭔가 긴급하게 주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가 거의 없다는 문제가 하나 지적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는 일반 방송 시청 중에 자막이 2단, 3단까지도 아래 자막이 기술적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방송 시청 중 일종의 시청권 방해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차제에 재난방송의 신속성과 정확성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만들어지면 재난상황과 경중에 따라 특보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특보도 해 왔고 속보도 해 왔고 뉴스도 해 왔고 여러 가지 방식대로 저희들은 해 왔습니다. 그것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조금 경중에 있어서 약하다고 생각하는 대부분 많은 분들이 풍랑에 걸려 있는 것 같은데 풍랑 같은 경우에는 자막으로 해서 풍랑 표시를 해 주고 일기예보 중 아나운싱으로 해서 진행해 왔는데 그것이 미실시 건으로 분류가 된다고 하니 편하게 그런 것 따지지 말고 이제 무조건 아예 하단 스크롤로 내보내자 해서 저희도 시스템 자체를 개발해서 넣고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요즘 시청률 높은 연예 프로그램이 대부분 밑에 자막을 처리합니다.

○ **신경렬 ㈜SBS 정책실장**
- 그 아래에 또 들어갑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겹쳐서, 그렇게 되면 거기에 덮어씌우는 것입니까?

○ **신경렬 ㈜SBS 정책실장**
- 거기는 전부 다 피하기 위해서 별도로 기술적으로 개발을 해서 그 아래 단계에 또 들어갈 수 있도록 별도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문자메시지가 들어가면 화면에 1단, 2단, 3단 자막이 나가는 경우도 발생하겠네요?

○ **신경렬 ㈜SBS 정책실장**
- 그렇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SBS는 자동으로 자막을 넣는 시스템을 예산을 수천만원 들여서 한 것 같습니다. KBS는 재난 주관방송사인데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까?

○ **이강덕 한국방송공사 대외협력실장**

- 저희는 아시다시피 예산까지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 포함해서 다 구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SBS와 비슷하게 통상 뉴스시간대 날씨를 통해서 그리고 풍랑이라는 한자 표현보다는 그것을 풀어서 '바다의 물결이 높게 인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 왔었는데 이런 지적이 있고 난 후부터는 표현도 날씨를 통해서도 '풍랑'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리고 자막은 기본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뉴스자막이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스크롤 형태로 그런 상황이 있으면 즉각 즉각 들어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아까 SBS 신경렬 본부장님은 그냥 흘림자막으로 가면 아무 효과가 없고 의미가 실감이 나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뉴스시간에 기상 캐스터가 이야기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 **이강덕 한국방송공사 대외협력실장**

- 제 생각에도 그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저희는 2가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에 따른 의무도 지키고….

○ **김석진 상임위원**

- 이 자리에 방송사에서 다 나오셨으니까 애로사항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래서 제도적으로 우리가 더 좋은 개선방향을 잡아야지 자꾸 행정기관이 과태료만 매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건의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재난방송을 국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직접 현업에서 해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 이런 애로사항이 있더라 그런 말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잠깐만요. SBS에서 신뢰보호 원칙과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하셨는데 혹시 고낙준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지요.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아까 가이드라인이 없었다고 먼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저희가 통보문을 보낼 때 방송 문안을 같이 보냅니다. 방송 문안에 시간과 장소, 재난명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다 고지됩니다. 방송 문안 자체를 그대로 내보내는 것이 저희는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안 했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법이 바뀌어서 모니터링을 그 전에는 못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모든 방송사 일일이 볼 수 없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못하다가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이 작년 6월 말에 개정된 것이 시행되면서 방심위 모니터링이 작년 7월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7월부터 그것을 모니터링 했고, 아까 작년 하반기 때는 일부 지적을 안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미처 살펴보지 못한 점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재조사를 해서 필요하다면 과태료를 부과할 생각도 있어서 다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뢰보호원칙 위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신뢰보호원칙은 위법에 대해서는 신뢰보호원칙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지 못한 것들이 작년 7월부터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신뢰보호원칙을

주장하시는 것은 다소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방송권역을 벗어나서 요청드린다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중앙 K·M·S 3사에 대해서는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전국을 다 요청하고 있고, 그리고 지역방송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에만 보내도록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광주영어방송 같은 경우에는 목포나 신안도 방송구역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서해안까지 관련된 부분들을 같이 보내주고 있습니다. 풍랑경보라고 해서 먼 바다지만 해안에 계신 어민들이 그것을 참고해야 하기 때문에 방송권역으로 보고 있어서 저희가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권역이 아닌 방송권역 벗어난 부분의 지역방송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스템상 보내주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마지막 질문으로 KBC에서 재난방송에 대한 어떻게 체감하고 있는지 한번 듣고 저는 질문을 종료하겠습니다.

○ 김영락 ㈜KBC 상무이사

- 저희들이 알고 있기에 정확히 파악이 안 돼서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자동송출시스템 문안이 오면 저희들이 자동으로 변환이 돼서 방송으로 송출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이 서울·경기지역 8개사는 완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방통위에서 지원이 됐든 행안부에서 지원이 됐든 지원이 돼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역에서는 그것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를 테면 광주에서 지진이 났는데 서울에서는 광주에 지진이 났다고 자막이 나가는데 저희들은 그 자막을 보고 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작 해당 지역에서는 이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자동송출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서울 중앙3사에서는 광주에서 뭐가 발생하고 있다고 나오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 문안 가지고 원고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어떤 식으로든 저희들 예산으로 하든 아니면 방통위 예산으로 하든 국가가 어떻게 그것을 지원하든 이것은 고쳐져야 할 상황입니다. 이것이 고쳐지지 않으면 저희들이 풍랑은 자주 발생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만 급하게 지진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아주 저희들이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문자가 오면 일일이 쳐서 넣으면 늦지요.

○ 김영락 ㈜KBC 상무이사

- 지역사의 상황은 그렇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러면 재난당국으로부터 오는 문자를 그대로 바로 밀어 넣는 것이 SBS가 그것을 만들었습니까?

○ 신경렬 ㈜SBS 정책실장

- 예.

○ 김석진 상임위원
- 그것은 얼마쯤 예산이 듭니까?

○ 신경렬 ㈜SBS 정책실장
- 4,000만원 들어갔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설치할 여력이 있습니까?

○ 김영락 ㈜KBC 상무이사
- 지역사에서는 그것이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것이 워낙 중요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해야겠습니다만 현재 지역사에서는 쉽게 그것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대책이 되어야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다른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 표철수 상임위원
-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기후 변화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재난이 예상치 않게 발생하는 것도 많고 예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예보와 일치되지 않는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잘 경험하시다시피 비가 서울만 하더라도 종로에는 엄청 떨어지는데 영등포에는 안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재난은 우리가 최대한 예보를 하고 대비하는데 목표가 있습니다. 지역방송 같은 경우 특히 여러 가지 재정상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관계되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두고 투자를 해야 한다, 그리고 투자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여러 가지 협조요청을 해서 더 좋은 방법을 찾아야겠습니다. 지역방송의 어려움은 이해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빨리 갖추어야 할 시스템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경인방송에서 방송권역이 안 미친다, 그 FM방송 제가 방송사 재직할 때 출범시킨 FM입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1일 생활권입니다. 방송권역이 아닌 쪽에 재난방송을 안 보낸다는데 인근 지역에는 방송사들이 자발적으로라도 재난방송은 예보해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인천에 있는 사람이 파주에 이동 안 한다는 보장이 없지요. 거기에 호우경보가 파주에 내렸는데 그것은 우리 지역 아니니까 안 한다, 그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천에서 당일 날 부산까지 급히 가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먼 지역보다 적어도 인근 지역에는 그와 같은 방송을 하는 것이 방송사

의 의무다, 재난방송의 본질에 대해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광주방송에서 말씀하시기를 7시 2분에 상황이 떨어졌는데 방송사고 날까 싶어서 날씨방송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셨다고 하고 재난과 관련된 것은 스크롤로 쳐서 넣는다고 하셨는데 스크롤을 넣어서 방송하는 것이 방송사고가 날 정도로 방송 내부의 시스템이 허약합니까? 방송사고의 우려 때문이라는 말씀은 제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 김영락 ㈜KBC 상무이사

- 죄송합니다.

○ 표철수 상임위원

- 가장 근본적인 것이 재난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남북 대치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유사시의 상황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이번에 북한이 '화성-12형' 미사일 발사했을 때 일본 보십시오. 일본 영토에 도달하기 전에 경보가 다 나갔습니다. KBS측에서 와 계신데 국가기간방송의 기본적인 책무로서 대비가 많이 되어 있을 텐데, 재난이라는 것은 그 전단계입니다. 재난도 굉장히 중요한 단계이고, 우리가 말하는 전쟁 위험 상황이라든지 이런 유사시 이전에 재난에 관련된 것은 온 국민이 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 위원들 간에도 재난 발령청에서 남발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논의를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안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재난방송은 유사시 대비하자는데 목표가 있기 때문에 보다 광의로 해석을 해서 대처를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 욱 부위원장

- 시스템 분야는 굉장히 논의가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방송 기자를 과거에 했었던 경험으로 보면 풍랑경보, 경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방송에서 일반적으로 쓸 때는 '물결이 거세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알아듣기가 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람이 센데 어느 정도 세다는 것이 있어야 사람들이 와 닿는 것이 많은데 그것이 이를 테면 '강풍경보'라는 식으로 될 때 그 용어라든가 아니면 전달되는 정확한 명칭 관련해서 재난방송에서 나오는 것과 방송 일선 현업에서 느끼는 그런 기준차가 이런 정도면 훨씬 더 낫지 않겠느냐는 식의 그런 건의를 하신 적이 있는지, 그리고 가장 대표적으로 해상의 경우에 동해 중부 먼 바다, 무슨 무슨 먼 바다라고 하면 이것이 감으로 잘 안 닿지 않습니까? 재난 발령청에서 어느 지역에 어느 만큼이라고 구체적으로 와 닿으면 훨씬 그것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위기의 인지의 정도라든가 아니면 준비의 정도들이 달라질 것 같은데 그런 문제에 관련돼서 혹시 건의하거나 의견을 내신 적이 있으십니까?

○ 신경렬 ㈜SBS 정책실장

- 없고, 지난해 경주 지진 이후에 국회에서 집중적으로 재난방송 문제가 거론이 됐고, 그 이후에 방통위와 미래부에서 한 차례씩 방송사들과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재난방송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가자라고 논의가 됐었는데 그 이후에 진전이

없어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바람의 강풍의 강도라고 했을 때도 이것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됐을 때 좀 더 빨리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재난의 경중에 따라서 지진이 됐든 이런 급한 경우는 바로 방송을 끊고 들어가면서 속보가 됐든 특보로 가는데 그런 경우 굉장히 실제로 방송하는 입장에서 보면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지요. 풍랑이니 강풍이나 애매한 한파니 어느 정도를 재난상황으로 보면서 방송을 끊고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이것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를 작년에 한 차례 정도 하다가 그 이후에 진전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이강덕 한국방송공사 대외협력실장**

-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대개 걸린 것이 오히려 일반 시청자나 또 날씨 정보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욱 더 알아듣기 쉽고 조금 더 유용하게 접근되도록 하기 위해 날씨 시간에 그런 식으로 표현을 알아듣기 쉬운 표현으로 바꾸어서 쓰다가 이렇게 지적들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나 혹은 의견을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시니까 드리는데 저희가 규정을 정해 주면 그것에 따라서 그것을 의무적으로 지키기는 쉽습니다. 지금도 풍랑주의보 자막 내라고 하면 얼마든지 낼 수 있는데, 의무적으로 하는 것과 실제로 정보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무엇이 도움이 되겠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저희가 계속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날씨정보가 필요한 분들은 뉴스시간에 날씨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 찾아봅니다. 자막은 그때 경보가 왔더라도 내면 의무적으로 한번 내면 의무는 충족되는데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세상이 복잡해져서 인터넷이나 디지털을 통해 이런 정보를 얻는 분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알아보니까 어민이나 이런 분들은 다 인터넷을 통해 자기들이 해당되는 정보를 찾아보고 갑니다. 실제로 정보상황도 많이 변했기 때문에 이런 의무를 정해 주시면 그것은 지키겠지만 그것 이외에 진짜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보가 제대로 적시에 그리고 필요하게 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만든다든지 지원하는 형태로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위원님, 더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의견청취한 내용에 대해 자료 제출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혹시 방송사업자 측에서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지요.

○ **박진관 (재)광주영어방송재단 사장**

- 광주영어방송입니다. 잠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저희 회사명처럼 외국인을 상대로 한 특수방송입니다. 저희는 영어방송이지만 영어, 베트남어, 중국어까지 포함해서 3개 국어를 하고 있는데 다문화가정까지 생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방송권역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저희들이 부족한 인력에 따른 비근무시간대 온 것에

대한 처리과정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한 점은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어떤 식으로든 처리하는 것이 맞다는 원칙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힘드시겠지만 방통위 측에서 메이저 3사라든지 우리 같은 특수방송이라든지 매뉴얼을 어느 정도 정리해서 세밀하게 보내 주시면 저희들도 좀 더 쉽게 방송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송혜진 (재)국악방송 사장**

-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소규모의 여러 여건이 좋지 않은 방송사이고, 그다음에 이번 재난방송을 하지 않은 것이 어떤 고의성이 절대 없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저희로서는 과태료가 상당히 부담입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도 널리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권혁철 ㈜경인방송 대표이사**

- 한 말씀만 드리면 이 자리에 오기를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방통위에서 재난방송에 대한 주의 경각심을 저희가 받아들이는 데 대해 제가 돌아가서 저희 직원들에게 확실히 전달할 것입니다. 아까 김석진 위원님 말씀처럼 방통위가 규제를 하되 방송의 품질을 너무 저하시키면서까지 중구난방의 재난방송은 지양했으면 좋겠다, 적절한 판단력을 방송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형태로 방송에서 전달을 빨리 해야 할 일인지, 2∼3분 뒤에 해야 할 일인지 조금씩만 자율성을 보장해 주시면 저희가 방송통신위원회 주도하는 재난방송 교육도 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방면으로 정책을 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표철수 상임위원**

- 오늘 말씀을 다 들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 더 효율적인 재난방송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여러 가지를 구체화시키는 노력은 더 계속 하겠습니다. 그런 점 말씀들 주신 것 충분히 경청했으니까 저희들이 참작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바쁘신 일정 중에도 의견청취에 성실히 임해 주신 의견진술인 및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모두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재난방송 실시 위반 건에 대한 의견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안건 심의를 통해 장내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가셔도 되겠습니다.

(의견진술인 퇴장)

이어서 김영관 국장님은 <의결안건 다>에 대한 검토의견 및 과태료 부과안을 보고해 주십시오.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8페이지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재난방송을 정확하게 실시하도록 하기 위해 재난방송 요청 시에 발령시간, 재난명, 재난지역, 행동요령, 발령기관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방송사업자는 재난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서 재해, 재난 또는 민방위사태의 관리를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난상황 등에 관한 발표내용을 반영하여야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재난주관 기관의 발표내용을 모두 반영해야 하지만, 전문가 의견을 고려하여 최소한 재난명·재난지역은 주관기관의 발표 내용대로 명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뉴스·보도기능이 없는 SO, IPTV, 위성방송사업자가 재난방송 등을 자막의 형태로 송출하는 경우에는 경보발령기관, 경보유형, 발생지역 및 시간정보를 화면에 송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풍랑경보 등 급박성이 없는 재난에 대해 적절한 표현으로 수정하여 방송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8조제5항 및 전문가 의견을 감안할 때 최소한 재난명칭과 재난지역을 정확하게 표시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간 이러한 방송이 관행으로 굳혀졌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지만 위법에 대해서는 신뢰보호 원칙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서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난방송으로 인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재난명은 경보가 아닌 특보로 표현하는 경우, 그리고 재난지역에 대해서 일부 지역을 누락하거나 시청자가 인식 가능한 범위 내에서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자별 위반내역입니다. KBS, MBC, SBS 등 11개 사업자는 112건에 대해 재난방송을 실시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최소한 재난명 및 재난지역에 대한 구체성이 결여된 44건에 대해서는 재난방송으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 외 12건은 미실시한 것으로 확정하고, 나머지 68건에 대해서는 재난방송을 실시하였지만 그 수준이 미흡하기 때문에 주의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과태료 부과(안)입니다. 한국방송공사 등 9개 방송사업자에 대해 재난주관기관의 발표내용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방송은 재난방송으로 볼 수 없으므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8조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별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먼저 <표>를 보시면 특별한 사유 없이 재난방송을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기준금액이 1,500만원입니다. 다만, 기준 과태료의 50% 범위 내에서 가중·감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구체적인 사업자별 과태료 부과(안)를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붙임 1>입니다. 저희가 이미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서 재난방송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건수 중 상당수를 재난방송을 한 것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과태료 금액까지 감경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게 많이 고려한다는 판단을 해서 과태료 금액은 감경하지 않고 기준금액 1,500만원을 그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를 보시면 각 방송사가 위반한 건수에 1,500만원을 보태서 과태료 금액을 산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보고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제가 제일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의혹을 갖는 이유는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제가 행정기관에 들어와서 정부 일을 하니까 너무나 규정에 얽매여서 아무런 융통성이 없습니다. 그저 시행령 제28조제2항, 그러면 그대로 다 적용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방송 현업에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잘 청취해서 그러한 것을 정책에 반영하는 고민이 담겨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케이스로 이번 재난방송 건을 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재난방송의 재난문자가 너무 많이 남발되고 있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제가 하나 행정안전부에서 온 것을 보면 '오늘 11시 폭염주의보, 낮 동안 야외활동 자제 및 물놀이 안전 등에 유의바랍니다' 솔직히 이것이 무슨 정보입니까? 폭염주의보, 이것이 정보입니까? 날씨가 뜨거우면 사람들이 안 나가지요. 야외활동 자제 안 해도 됩니다. 이런 것을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계속 남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무조건 우리는 자막으로 다 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난방송을 우리가 문자메시지로 꼭 받아서 내야 하는 것은 엄격하게 선별하는 기준을 따로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시행령을 고쳐야 한다고 제가 여기에서 정책건의를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재난방송이라면 주의보 이런 것은 자율적 판단에 맡기자는 것입니다. 지진, 해일, 홍수, 태풍 이것은 당연히 정규방송 끊고 재난방송 들어갑니다. 그것은 우리가 시키지 않아도 합니다. 지상파 같은 경우는 상시 흘림자막, 스크롤바가 하단에 없기 때문에 정규방송을 갑자기 하고 있다가 클라이막스 드라마를 하고 있는데 집중도가 떨어지게 갑자기 자막이 하나 나타납니다. 보면 안개주의보입니다. 아니면 남해 먼 바다 풍랑주의보입니다. 그런 부분을 꼭 그렇게 집중력을 요하고 아주 국민들이 몰입하고 있는데 그것은 시청 흐름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짜증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한 기준을 우리가 만들자는 것입니다. 보도채널이나 종편은 거의 JTBC 하나밖에 안 걸렸습니다. 왜? 평상시 흘림자막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넣으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분명히 차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업주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당 1,5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 아까 SBS, 그것을 과하게 표현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10년간 그렇게 관행으로 굳어져 와서 아무런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처리해 왔는데 갑자기 어느 날 예고도 없이 불쑥 '돈 내놔라', '과태료를 때렸다' 이것은 무슨 의도냐? 이렇게까지 사업자들이 컴플레인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상파 재허가에 벌점이 매겨집니다. 이대로 간다면 50점 이상 벌점이 예상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치명적인 점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과태료를 지금 바로 매길 것이 아니라 작년에 모니터해서 처음으로 1/4분기 들여다봤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행정지도가 먼저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건수를 주셨습니다. 위반내역을 몇 가지만 인용하겠습니다. 위반 내역 <붙임 2> 1페이지 보면 KBS 마지막 <5>번 풍랑경보(동해남부먼바다), 이것이 지도상 먼 바다의 높이까지 '매우 거세다' 지도상에도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다 전달됐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MBC <1>번 안개주의보는 모든 사업자 다 걸렸습니다. 이것이 새벽 5시 41분 상황입니다. 이것이 라디오방송까지 다 걸렸습니다. 안개주의보입니다. 31개 지역을 다 일일이 라디오방송, 국악방송이 이것 다 읽어야 합니까? 주의보인데 이것 너무 과한 것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이것 다 1,500만원 다 부과했습니다. 광주영어방송 같은 경우 1억 2,000만원 과태료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휘청거립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더 정책당국의 따스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2페이지 <10>번 보십시오. 울릉도, 독도 대설경보 자주 발령되는 상황입니다. 새벽 4시 49분입니다. 아직 정규방송 시작하기 전입니다. 그런데 지도상에 대설경보 지역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반사항을 보면 재난방송지역 2개 중 1개 미포함, 봤더니 울릉도, 독도 중에 독도 하나 빠졌다고, 울릉도는 이야기했고 독도가 빠졌다고 미포함이라고

해서 위반으로 적어 놓았습니다. 독도에 주민들이 몇 명 삽니까? 울릉도가 대설경보면 당연히 독도가 대설경보가 되겠지요. 이런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풍랑경보 <13>번 보시지요. 서해남부 먼바다 풍랑경보, 지도상 물결높이 표시하면서 전부다 표시가 됐습니다. 이것도 서해남부 먼바다, 그것을 지도상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어떻게 표시할지 궁금합니다. <19>번 동해남부 먼바다 풍랑경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상에 다 표시를 했습니다. 이런 것도 다 1,500만원씩 부과했습니다. SBS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더 이상 읽지 않겠습니다. 여기 보면 <3>번, <8>번, <9>번, <10>번 다 과도하게 위반사항으로 지적이 된 것입니다. 다시 우리 사업자 이야기를 다 들었고 우리가 정말 이번 기회에 기계적으로 시행령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분명히 현장에서 그런 애로사항과 고충이 있다면 정말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원칙에는 해상은 포괄적인 지역이라도 재난방송에서 빼주기로 인정하겠다고 해 놓고 왜 이것을 다 집어넣어놓았습니까? 그러면 아까와 말이 다른 것 아닙니까? 이 보고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건수는 달라져 있습니다. 그것이 대부분 다 풍랑, 강풍 이런 것입니다. 건조주의보도 산불조심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산불조심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SBS <3>번 보면 건조경보 나와 있습니다. 자막표시하고 '동해안을 중심으로 매우 건조한 날씨가 이어져서 산불 조심해야 한다' 오히려 건조경보하고 괄호 열고 지역 표시한 것보다 이것이 더 '산불조심해야겠구나' 정보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더 디테일하게 했으면 이것 빼주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너무 기계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들여다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시작하게 된 것은 방통위에서 자체적으로 검토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방심위에서 모니터링 한 결과, 재난방송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건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기계적으로 적용한 것이 아니라 방심위에서 모니터링한 결과, 저희들에게 보내 준 건수가 총 142건입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그 142건에 대해 검토를 해서 실제로 방송을 안 한 건, 방송을 했지만 사실상 재난방송으로 보기 어려운 건, 그리고 재난방송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건 그렇게 나누어서 나름대로 재량을 발휘해서 보고드린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재난방송 기준과 관련해서는 모든 재난 메시지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재난방송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안건 3페이지에도 나와 있지만 지진 규모 3.0이상 그리고 각종 경보 강풍경보, 대설경보 이런 것들 위주로 재난방송을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보는 안개주의보에 대해서만 재난방송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개주의보 같은 경우는 큰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왜 이렇게 재난방송을 안 한 것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됐느냐는 지적이 있었는데 사실은 '16년 7월 방심위에서 모니터링을 하도록 규정하기 전에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었느냐 하면 재난방송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에 방송사들이 스스로 우리는 재난방송을 했다고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저희들이 실제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인력과 물적인 기반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인정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제대로 하는지를 봐야겠다고 해서 '16년 7월에 방심위가 모니터링을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아까 전에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국정감사 때도 재난방송을 제대로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논의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방송사가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했어야

한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송사들 중에서 "가이드라인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재난방송은 신속하고 정확하여야 한다. 정확하게 재난방송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난 관계기관이 발표한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잠깐 읽어드렸다시피 8페이지 보시면 뉴스·보도기능이 없는 SO, IPTV, 위성방송에게도 경보발령기관, 경보유형, 발생지역 및 시간정도를 화면에 송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뉴스·보도기능이 있는 방송사업자는 더더욱 정확하게 방송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그리고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 9페이지를 보면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난방송으로 인정한다' 경보가 아닌 특보로 표현한 경우는 재난방송으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원칙을 지키지 않고 <붙임 2> 2페이지에 건조특보, 강풍특보 언급을 했는데도 위반이라고 했습니다. 또 해상지역을 지도상에 포괄적으로 표현하고 바다 물결을 풍랑특보처럼 매우 높게 일겠다고 언급한 부분은 인정해 주겠다고 해 놓고도 여기에 전부 동해남부 먼바다 이런 것 전부다 위반으로 분류해 놓았습니다. 앞뒤가 다른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정밀하게 봐서 더 뺄 것 있으면 더 빼고 다시 올리자는 것입니다.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그 부분은 예를 든 것 중에 예를 들면 재난지역명이 명확하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을 어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난방송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본 것입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러니까 일부 지역을 누락하는 것도 인정하겠다고 해 놓고 독도 뺐다고 울릉도도 넣었다고 위반으로 보면 안 되지요.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재난지역이 빠진 부분을 저희들이 재난방송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본 것입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좌우지간 제가 볼 때는 포괄적으로 너무 앞 설명과 뒤에 위반한 건수가 안 맞다는 것입니다. 정밀하게 다시 봅시다.

○ 이효성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김석진 위원님 문제제기도 일부 공감합니다. 사무처의 국·과장님 애로사항이 많을 것입니다. 이것이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른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재난경보나 이런 것들은 기상청,

행정안전부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민방위법에 따라 통보한 내용을 저희가 방송사업자에게 방송하도록 공문을 보내는 것입니다. 재난이라는 것이 재난경보를 발령해서 사고가 안 나면 다행이지만 발령이 안 난 상태에서 대형 인사 사고나 또 재산상 사고가 난다면 사실은 큰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한다면 사무처의 고민들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제가 또 서면으로 사업자들의 소명을 듣고 고민했던 것과 오늘 현장에 나와서 직접 개별사업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실은 더 고민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1/4분기 재난방송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인데 아마 사무처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1/4분기 것을 3/4분기 돼서 처리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4·5·6·7월 사실상 방송통신위원회가 구성이 안 돼서 부재했습니다. 사무처가 업무를 해태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본다면 저희가 물론 오늘 안건 올리기 전까지도 상당히 많은 고민과 논쟁이 있었습니다만 김석진 위원님의 지적 그리고 저도 사업자들의 이야기를 미처 서면회의에서 다 표현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한번 정도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하면 어떨까? 국장님, 과장님 크게 차질이 있습니까?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하시면 저희는 따르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 욱 부위원장**

-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이나 방송통신발전기본법과 관련해서 소송으로 가더라도 우리 쪽보다 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평가해 달라는 의미로 일종의 행정법에 관련된 판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과 같은 내용들을 다 듣고 나서도 여기에 나왔던 대로 그대로 과태료 처분이 나간다면 행정소송에서 과연 어떻게 될까라는 것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라디오방송에서 거기에 나왔던 21개를 다 읽으라는 이야기는 그 시간이나 관련된 내용으로 볼 때 적절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규정의 신속성과 정확성이 매우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방송 메커니즘이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법 규정이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존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과연 행정소송으로 가면 일반 판사들은 일반적으로 법리적 판단을 할 때 그것은 어떻게 할까? 예를 들어 아까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울릉도, 독도 가운데 독도 빠졌다고 해서 그것이 완전하게 제대로 수용하지 않은 것이냐라고 보기에는 다툼의 소지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쪽에서 이것 관련된 규정을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는 것은 우리들도 행정법 그리고 행정지도 전체를 볼 때 다소 협소하고 아니면 재난방송을 보다 더 효과적이고 보다 더 제대로 하겠다는 의지가 아니라 방송사 전체에게 왜 이 규정 안 지켰느냐, 그것에 따라서 바로 과태료 부과는 너무 기계적인 방식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재난방송을 해 나갈 수 있는지, 아까 말했던 가이드라인은 어떤 방식으로 되는 것이 편할지

에 관련해서 한번 더 숙고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한 말씀만 짧게 드리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부위원장님 말씀이나 김석진 위원님 말씀에 대한 반박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에서는 법규에 따라 엄격하게 조사하고 입장을 정해서 보고한 것입니다. 그러나 안건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들 판단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사무처에서 이것을 아주 기계적으로 했다는 것보다는 원칙에 따라서 엄격하게 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무처도 최선을 다했다고 봅니다. 대신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 안건에 대해서는 그동안 이견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 점을 고려해서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특히 사업자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요인들이 추가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재고하고 논의하자는 취지입니다. 사무처에서 많은 건수를 일일이 다 검토하고 또 전문가 자문까지 받고 한 것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판단합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 욱 부위원장**
- 저도 사무처의 노력이 특정 법규를 기계적으로 적용했다는 식의 표현이었다면 그것은 수정하겠습니다. 있는 현실과 상황 속에서 재난방송의 중요성을 방송사업자가 훨씬 더 깨닫고 경각심을 갖고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소송으로 전환될 경우에 혹은 일반적으로 전체성을 놓고 본다면 과연 합리적인 판단의 근거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에 관련돼서 위원님들끼리 따로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처 노력에 관련해서는 저 역시도 고생했다는 말씀드립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저는 여전히 재난방송이나 우리가 유사시에 대비하는 여러 가지 방송의 그런 기능에 대해서는 보다 광범위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단지 지금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오늘 사업자들 의견을 들어봤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숙고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면밀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원래 당초

에 사무처에서 기획한 안보다는 건수는 많이 줄인 것은 분명하지요?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저만 사무처에 대해서 너무 엄혹한 사람으로 비춰서 당혹스럽습니다만 우리가 너무 기계적으로 룰을 적용하지 말자는 것이지요. 현장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귀를 기울여서 고민을 담아내자는 뜻입니다. 아까 들어보니까 광주영어방송이 1억 2,000만원입니다. 또 국악방송 1건에 1,500만원은 탕감해 주어야 합니다. 1건 걸린 것은 탕감합시다. 그런 안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제가 강요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안을 주시면 저도 고민해 보고 또 위원님들 다 돌리면서 상의합시다. 그런 부분들도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저희들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조금 더 논의를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할 텐데 제가 기계적인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재난방송을 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이 되면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려면 재난방송으로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 점은 참고를 하셔서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오늘 관계자들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특히 소규모 방송들은 과태료 자체가 너무 또 무거워서 회사 운영에도 상당히 지장을 줄 정도가 된다면 여러 위원님들도 그런 의견이시니까 조금 더 연구를 해서 경감 방안도 더 고려해 보셔서 이것은 다음에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은 의결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8. 기 타

○ **이효성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회의는 9월 14일 목요일 오전 9시 30분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부터 오후까지 연이어 진행된 회의에 임하시느라 위원님들과 관계자 여러분, 모두 무척 수고 많으셨습니다.

9. 폐　　회

○ 이효성 위원장

- 이상으로 2017년 제30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5시 45분 폐회 】